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사안내 및 강의시간표

2022학년도 1학기



■ 대학원 홈페이지: <http://songeui.catholic.ac.kr/gscuk>

☞ 유의사항 :

수강신청은 별도의 안내없이 수강신청기간내(1월 26일~2월 1일)에 인터넷으로 합니다.
연구계획서 제출자, 논문 제출자는 기간내에 신청서를 중앙포탈시스템(uPortal)으로 입력 후 출력하여 지도교수 날인을 받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교학팀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기 간	구 분	2022학년도 1학기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납부	2022.02.22(화)-02.24(목)	2022.08.17(수)-08.19(금)
	연구계획서	2022.03.02.(수)-03.04(금)	2022.09월 초순
	박사논문	3월 21일(월) ~ 5월 20일(금) ※ 심사기간 : 3/21(월) ~ 5/31(화)	9월 16일(금) ~ 11월 18일(금) ※ 심사기간 : 9/16(금) ~ 11/30(수)
	석사논문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은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 있다. 우리는 이 영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의료인을 양성하고 의학을 연구·발전시키며 사랑에 찬 의료봉사를 베풀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 우리는 환자의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며 끊임없는 기도와 봉사로써 우리 자신은 물론 환자와 그의 가족도 병을 치유하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믿음을 갖도록 한다.
-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닌 역량있는 의료인을 양성하고,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 아낌없는 사랑으로 환자를 보살피도록 교육한다.
- 우리는 질병 퇴치를 위한 최선의 치료와 예방 및 재활에 힘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생명의 신비와 존엄성을 해치는 어떠한 연구도 하지 않는다.
- 우리는 건강을 회복하는 환자가 하느님의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이끈다. 또한 죽음을 맞는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인간다운 품위를 지니도록 돕는다.
- 우리는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의 어려운 형편에 마음을 기울여, 이 환자들도 따뜻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쓴다.

1986년 11월 24일

교육이념

가톨릭 정신에 바탕을 둔

진리 사랑 봉사

대학원 교육목적

인간을 존중하는 전문인,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사회인 및
인류사회 발전과 평화에 공헌하는
세계인을 배출한다.

대학원 교육목표

1. 전문적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한다.
2.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창조적인
사회적 지도자를 기른다.
3. 전공지식과 연구결과를 인류사회
발전에 응용·봉사하는 국제적
전문인을 기른다

대학원교학팀 전화번호 안내

직 위	성 명	전 화 번 호	비 고 (담당업무)
대학원장	박철휘	원장실 cheolwhee@catholic.ac.kr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서울성모병원 근무
교학부장	이석형	교수실 suhulee@catholic.ac.kr	병리학교실 교수
팀 장	문희재	대학원교학팀 02-2258-7071 moonshine@cmcnu.or.kr	대학원 업무 총괄
차 장	송미령	대학원교학팀 02-2258-7073 smlcmc@cmcnu.or.kr	기획, 교무, 위원회
과 장	국 현	대학원교학팀 02-2258-7086 whitecub@catholic.ac.kr	입시, 학적, 지도교수, 외국인학생 관리
대 리	이혜련	대학원교학팀 02-2258-7074 ryoni@catholic.ac.kr	장학, 병무, 논문, 졸업, 제증명
사 원	김보영	대학원교학팀 02-2258-7072 wjason@catholic.ac.kr	수업, 성적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대학원 비전 2030 및 체계도

비 전	생명중심의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리더	
인 재 상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윤리적 리더	
목 표	preeminence : 특화 교육연구의 탁월성을 바탕으로 세계 100위권 진입	
전략	20대 전략과제	
I. 교육 과정 혁신	학사제도 유연성확보	1-1 융복합학과1) 신설
		1-2 CUK모듈형 ON-OFF 하이브리드 수업 시행 (전공 이론과목 중심)
	학생중심교육지원 체계구축	1-3 중핵 공통 교과 및 비교과 신설
		1-4 국내·외 대학과의 복수 학위제도 확대
		1-5 대학원생 맞춤형 진로지원 시스템
	학생중심 연구지원 체계구축	1-6 학·석사 연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확대
		1-7 우수 대학원생 Fellowship 신설
II. 특화 연구 강화	특성화연구 분야육성	2-1 6대 특화 선도연구분야(의료AI, 바이오헬스신소재, 정밀의학, Smart Pharma, 사회정책, 중독) 선정 및 적극 육성
		2-2 외부 연구비 (대형·장기 과제) 수주 확대
	우수 연구자 확충	2-3 특화 연구 관련 분야 신임교원 확충
		2-4 해외 석학 초빙 시스템 구축
	연구지원 제도혁신	2-5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국제연구협력센터 운영
		2-6 Pminent Researcher 제도 운영 (6free시수 감면, 연구인센티브 5천만원 지급)
	학문후속 세대양성	2-7 박사후 (Post-Doc) 연구원 등 연구교수 지원 확대 (아시아권 등 외국인 포함)
III. 산학 협력 선도	산학 네트워크 강화	3-1 산학협력 플랫폼(기업·지역·글로벌) 고도화
		3-2 지역연계 중심 산·학·관 클러스터 구축 (대학-서울서부/부천시- 지역기업)
	미래기술 육성	3-3 기술·지식 사업화 평가 시스템 구축
IV 행정 시스템 향상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	4-1 대학원 중심 거버넌스 확립
		4-2 CURE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대학원 차원의 IR제도 포함)
		4-3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제2국제관 신축

목 차

1. 2022학년도 상반기 대학원 학사력	6
2. 대학원 홈페이지(uPortal) 이용 안내	7
3. 등록 및 수강신청	8
4. 연구계획서	13
5. 공개종합시험	14
6. 학위논문 제출 자격	15
7. 학위논문 제출 시기 및 심사	16
8. 학위논문 업무 흐름도	17
9. 휴학 및 복학	18
10. 기타 사항	19
11. 대학원 학위논문 IRB 심사	22
12. 교시별 강의시간표	25
13. 학과별 이수학점 및 강의시간표	26
14.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	49
15. 주요 서식	101

1. 2022학년도 상반기 대학원 학사력

요일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학 사 내 용	
22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수) 3.2(수)-4(금) 3.18(금)-31(목) 3.21(월)-5월20(금) 3.21(월)-5월31(화) 3.24(목)	1학기 개강 연구계획서 접수 연구계획서 심사 석사, 박사 학위 청구논문 접수 석사, 박사 학위 청구논문 심사 (2단계심사: 예비심사, 본 심사) 성의 대학원운영위원회(예정)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4.18(월)	부활절 휴강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1(일) 5.5(목) 5.8(일) 5.20(금) 5.31(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휴강) 석가탄신일 석사, 박사 학위 청구논문 접수 마감 석사, 박사 학위 청구논문 심사 마감
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6.14(화) 6.18(토) 6.13(월)-17(금) 6.17(금) 6.23(목)	합동강의 기말시험 1학기 종강 대학원 학술상 논문 접수 1학기 성적 제출 마감 성의 대학원운영위원회(예정)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7월초 7월중순 7.21(목)-27(수) 7.21(목)	일반대학원운영위원회(예정) 대학원위원회(예정) 재학생 · 신입생 수강신청기간(예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예정)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19(금) 8.23(화)-25(목) 8.29(월) 8.29(월)-9.1(목)	2022년 가을 학위수여식 재학생 등록금 납부 기간 2학기 개강 연구계획서 접수

2. 대학원 홈페이지 (uPortal) 이용 안내

- 대학원 홈페이지: <http://songeui.catholic.ac.kr/gscuk>
- 가톨릭종합포탈시스템(uPortal) : 대학원 홈페이지 상단의 uPortal 클릭
- [학생] 주요 메뉴

Step 1.	(※ uPortal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학사정보		
Step 2.	대학원학적/졸업/제증명/예비군	대학원수업/성적	대학원등록/장학
Step 3.	[대학원학적] · 신상정보수정 · 대학원생 경력사항 등록 · 논문심사 결과 조회 등	[대학원수업] · 수업평가입력 · 강의계획서출력(성의) · 수강신청(성의) · 개인시간표(성의)	[대학원등록] · 등록금고지서/납입확인서 · 교육비납입 증명서 · 분납신청, 분납수납내역 · 분납고지서출력
	[대학원졸업] · 연구계획서 심사신청 · 석사학위 논문 심사신청 · 박사학위 논문 심사신청	[대학원성적] · 금학기성적조회 · 전체성적조회	[대학원장학] · 장학생활인
	[대학원예비군] · 전입신고등록		

※ 교·직원인 경우, 이름 환경 설정 버튼 클릭 → MY SECRET → 대표신문 수정 → 변경 가능한 Role에서 대표권한여부 체크 → 저장

※ 가톨릭종합포탈정보시스템(uPortal) 이용 관련 문의는 정보운영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02-2258-8044

- [교원] 주요 메뉴

Step 1.	(※ uPortal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학사정보	
Step 2.	대학원학적/졸업	대학원수업/성적
Step 3.	[대학원학적] · 학적마스터조회 · 재적생명단 · 대학원 지도학생 명단 등	[대학원수업] · 강의계획서등록(성의) · 강의계획서조회(성의) · 수업평가먼트조회 · 수업평가 교수별 통계자료(성의) · 출석부(성의) · 강의과목별 수강생명단 등
	[대학원졸업] · 논문(연구계획서/논문)파일DOWNLOAD · 교수별 논문 심사 건 수(상세)	[대학원성적] · 성적입력(원의) · 채점표(성의)

가. 전공별 지도교수 명단 : 홈페이지 학과 소개

나. 강의 진행방법

- 개강 후 교과목 담당교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업 담당교수 당부사항

1. 홈페이지 (uPortal)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수업진행 방법 및 레포트 제출 안내, 기타 공지사항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적제출 마감일까지 성적을 uPortal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설과목 교수요목을 웹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강의계획서를 빠짐없이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15주 강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휴일 등으로 인해 휴강된 경우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대학원 수업담당(02-2258-70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교수 당부사항

1.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도교수별 학생에 대하여는 홈페이지(uPort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도교수 지침 자료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02-2258-708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등록 및 수강 신청

☞ 홈페이지(uPortal)에서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 록

석사학위 과정은 최소 4학기 이상, 박사학위 과정은 최소 6학기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최소 8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학과별 이수학점표

▶ 간호학과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비 고
필 수	전 공	18 학점	18 학점	
	학위논문세미나	2 학점	3 학점	
선 택		6 학점	15학점	
계		26 학점	36 학점	

▶ 보건학과

구 분		박사과정	비 고
필 수	전 공	9 학점	
	초 독	4 학점	
선 택	타 학과 전공과목 포함	23 학점	
계		36 학점	

▶ 의학과

1. 2020학년도까지 입학생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필 수	전 공	6 학점	9 학점	15 학점(석사6+박사9)
	초 독	2 학점	3 학점	4 학점(석사2+박사2)
	합동강의	3 학점	6 학점	9 학점
부전공	타학과(전공) 필수과목	6 학점	6 학점	9 학점
선 택	전공선택+기타과목	7 학점	12 학점	23 학점
계		24 학점	36 학점	60 학점

2.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필 수	전 공	6 학점	9 학점	12 학점(석사6+박사6)
	초 독	2 학점	3 학점	4 학점(석사2+박사2)
	합동강의	3 학점	6 학점	9 학점
부전공	타학과(전공) 필수과목	6 학점	6 학점	9 학점
선 택	전공선택+기타과목	7 학점	12 학점	20 학점
계		24 학점	36 학점	54 학점

▶ 의생명·건강과학과

1. 2020학년도까지 입학생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전공 + 선택	9	12	21
공통	6	6	12
생명의과학세미나	3	6	9
개별지도연구	6	10	14
세미나, 초독	-	2	4
연구윤리	1	1	1
계	25	37	61

2.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전공 + 선택	9	12	18
공통	6	6	9
생명의과학세미나	3	6	9
개별지도연구	6	10	14
세미나, 초독	-	2	4
연구윤리	1	1	1
계	25	37	55

▶ 생명윤리학과

구분		박사과정	비 고
공통필수	생명윤리세미나 I, II, III	9	
	박사논문연구 I, II	4	
전공필수		12	
선택		12	
합계		37	

▶ 융복합의과학과

구 분		박사과정	비 고
필 수	전 공	12	
	세미나	4	
	개별지도	8	
선 택(타 전공 포함)		12	
합 계		36	

▶ 정밀의료빅데이터학과

구 분	의학	이학
전공(의학/이학)필수 및 선택	15	15
개별지도연구	6	6
세미나, 초독	2	2
생명윤리	1	1
계	24	24

※ 학과 과정별 과목번호

학과	석사필수과목	선택과목	박사필수과목	비고
간호학과	Nurs5**	Nurs6**	Nurs7**	
보건학과	-	Heal4**, Heal6**	Heal7**	
의학과	M***5**	M***6**	M***7**	
의생명·건강과학과	-	-	-	과정구분없음
생명윤리학과	-	Jmth6**	Jmth7**	
융복합의과학과	-	Idhs6**	Idhs7**	
정밀의료빅데이터학과	Pmbd1**(의학전공) Pmbd2**(이학전공)	Pmbd3**	-	

다. 수강 신청

【 개강 후 대학원홈페이지 ☞ 종합포탈정보시스템(uPortal) 또는 전화로 담당교수 지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1) 이수학점이란 수료에 필요한 각 과정별 학점이며, 학위청구논문제출 학기에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수 학점표 참고)
- 2)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재학 학기 내에 분할하여 취득하여야 하며, 1학기당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가) 박사과정의 경우 타 전공분야 입학자로서 보충과목을 추가 이수하는 경우에는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간호학과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학위논문세미나 과목을 신청한 학기에는 1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 의생명·건강과학과 학생은 학기당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수강신청 시 과목번호·시간이 중복될 시는 수강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4) 수강신청 시 먼저 click 한 과목에 대해 이수학점 충분조건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 5) 수강신청 인원이 1명인 선택과목은 폐강되며, 수강신청 기간 후 폐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변경 신청하여야 하므로 수강신청기간 이후에 수강교과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폐강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변경자는 대학원교학팀(담당자 02-2258-7072)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의학과

가) 전공별 특강 I, 특강 II (I 석사 전공필수, II 박사 전공필수)

- 컨퍼런스, 개원의 연수강좌, 웹 강좌, 술기 교육, 저널 발표 등의 교육

나) 합동강의 : 의학과 필수이며, 의학과에서 신청바랍니다.

- 석사는 3학점, 박사는 6학점, 석·박사 통합과정은 9학점을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단, 1학기 수업은 중복수강 안됨)

- 시험자격: 15주 중 10주 이상 출석(15주 중 5번 결석까지만 시험자격 부여)

- 성적산출: 출석 50% + (필기시험 + 기타평가) 50%

- 1회 결석 시 출석점수 2점 감점

다) 부전공 수강 - 의학과 필수

타 전공(학과) 필수 과목 중 동일한 전공에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석사 6학점, 박사 6학점, 석·박사 통합과정 9학점(석사 3학점 + 박사 6학점)

☆ 예) 내과 석사 전공학생이 1학기에 부전공을 소아과학 필수과목에서 1과목 신청하였으면 다른 학기에 부전공을 반드시 소아과학 필수과목에서 신청하여야 함

☆ 수강신청 시 최초 타 전공(학과) 필수과목을 수강신청하면 부전공으로 인정됩니다.

7) 의생명·건강과학과

가) 생명의과학세미나 : 의생명·건강과학과 필수

- 석사는 3학점, 박사는 6학점, 석·박사 통합과정은 9학점을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단, 1학기 수업은 중복수강 안됨)

- 시험자격: 15주 중 10주 이상 출석(15주 중 5번 결석까지만 시험자격 부여)
- 성적산출: 출석 50% + (필기시험 + 기타평가) 50%
- 1회 결석 시 출석점수 2점 감점

나) 개별지도연구 : 의생명·건강과학과 전공필수 과목이며, 석사는 6학점, 박사 10학점, 석·박사 통합과정은 14학점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합니다.

다) 연구윤리 : 의생명·건강과학과 전 과정 학생은 반드시 1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8) 수강신청시 석사 3학기부터는 박사과정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으나 (수강 신청 시 석사 3학기부터는 개설교과목이 석·박사 모두 보여짐) 가능하면 석사 3학기생들은 석사교과목에서 수강신청 하십시오. (박사과정 입학시 석사 때 이수한 박사과정 필수 과목에 대해서는 중복 수강으로 인정해서 수강신청 할 수 없습니다)

9) 수강신청 정정기간은 별도로 공지하지 않습니다. (개강 후 1주일 이내)

라. 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학원 홈페이지 상단 (uPortal): <https://songeui.catholic.ac.kr/gscuk> 】



1. 학과별, 과정별 이수학점과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수강할 과목을 정함.
(1학기당 9학점 이내).
2. 보충과목 이수자는 대학원교학팀(담당자 02-2258-7072)에 개별연락 바랍니다.



수강신청 후 폐강과목을 신청한 학생은 대학원교학팀에 개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02-2258-7072)



개강 후 교과목 담당교수 지시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report, 출석 등의 지시 사항은 강의계획서를 확인, 담당교수에게 문의)

<유의사항>

- ※ 보건학과는 수강신청 전 학과사무실에서 수강신청 orientation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개강 후 교과목 담당교수께 강의 진행방법 등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 레포트 제출

초독 혹은 부전공 과목을 신청한 학생은 1개 학기 동안 4회에 걸쳐 강의 담당 교수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강의담당 교수에게 레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며, 레포트 표지는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down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레포트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학점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재수강하여야 합니다.

제출횟수	1회	2회	3회	4회
제출일자	3월 18일	4월 15일	5월 13일	6월 10일

- 초독 : 1회 4편, 부전공 과목 : 1회 1편

- 레포트 내용 : 해외 논문을 읽고 내용을 한글로 요약하여 작성

※ 선택과목에 대해서도 담당교수가 레포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이 수강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담당교수님에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4. 연구계획서



대학원 홈페이지(uPortal)에서 신청서를 입력한 후 출력하여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확인을 받고, 심사료를 입금한 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

가. 실시학과

간호학과, 보건학과, 의학과, 의생명·건강과학과, 생명윤리학과

※ **박사과정 의학과, 박사과정 의생명·건강과학과, 융복합의과학과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필수 심사 대상임.**

나. 제출자격

입학 후 2학기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최소한 논문제출 6개월 전까지는 심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연구진행 중 주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논문 제출 6개월 전까지 진행되어야 함)

다. 연구계획서 작성

1) 연구계획서에는 이를 심사할 심사위원이 연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학위논문 작성을 위하여 장차 진행할 연구목적, 내용, 방법, 진행예정, 개요 및 참고문헌 등이 상세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2) ‘연구계획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 대상 여부 확인서’ 제출

가) IRB 심의 대상 : 사람을 대상(Human subject)으로 하는 모든 연구

나) 심의시기 : 논문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연구 계획 중 IRB 심의 대상이 되는 연구 계획은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IRB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심의기관 : 대학원 논문예 대한 IRB 심의는 원칙적으로 성의교정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담당하나, 각 병원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병원에서 IRB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

라) 심의신청자 : **IRB 심의신청은 지도교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타 IRB 심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IRB사무국(담당자 : 김효진 02-2258-8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 서식자료실의 연구계획서 양식 참조>

☆ **연구계획서와 학위논문은 주제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주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연구계획서 변경신청서와 연구계획서 변경 요약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심사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연구계획서 심사 시 참고 사항

- 연구계획서 심사를 받은 경우

- 1)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논문(accepted paper 포함) 주제와 학위논문 주제가 같으면 연구계획서 주제와 다르더라도 연구계획서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2) obligation의 논문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으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주제와 학위논문 주제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 받아야 합니다.

마. 심 사

지도교수를 포함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합니다.

바. 제출시기

구 분	2022학년도 1학기	2022학년도 2학기
접수기간	2022.03.02(수) ~ 03.04(금)	2022.09월 초순
심사기간	2022.03.21(월) ~ 05.31(화)	2022.09월 중순

사. 제출서류

- 1) 연구계획서 심사신청서 【종합포탈정보시스템(uPortal)에서 출력】 1부
- 2) 심사료 : 석사-120,000원, 박사-150,000원
- 3) 연구계획서 제출 방법 : 연구계획서 심사논문 파일을 온라인 업로드

5. 공개종합시험

가. 목 적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실시하며,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대 상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논문제출자격 accept paper를 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한 자

다. 시행 방법

논문제출자격 accept paper를 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한 자는 학위논문심사와 병행하여 공개종합시험을 실시합니다.

6. 학위논문 제출 자격

가. 석사, 박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연구계획서 심사 또는 (공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2) 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이수학점표 참조)
- 3) 석사는 4학기 이상, 박사는 6학기 이상 등록한 자
- 4) **간호학과 박사과정 부논문** : 학술지 수준이 KCI 등재지 이상(접수 당시)
 - 저자: 학생이 단독 제1저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단, 기타저자를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와 상의 하에 결정)
 - 형태: 연구 설계 제한 없음 (단, 석사논문의 게재는 부논문 불인정)
 - 대상: 모든 학생(단, 청구할 학위논문이 출판되어 JCR ranking이 상위 50%인 경우 부논문으로도 동시 인정)
- 5) **전일제**
 -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국내학술지 또는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로 발표(또는 11월30일까지 게재 예정된 논문도 가능)된 논문을 1편 이상 제출한 자.
 -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SCIE에 등재된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로 발표(또는 11월30일까지 게재 예정된 논문도 가능)된 논문을 1편 이상 제출한 자
- 6) **발표한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학생이 제1저자이고(박사 단독 제1저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CA)인 경우에만 학위논문으로 인정(공동 교신저자 인정)
[석사는 국내학술지 또는 국제학술지 논문, 박사는 SCIE 논문으로 한다.(단, 박사의 경우 공동 제1저자는 IF 5.0 이상 또는 해당 학문분야 상위 10% 이내의 논문을 제출할 경우 인정)]
 - ※ 국내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A등급 국내학술지에 한합니다.
 - ※ 공동 제1저자인 경우 : 2명 중 1명만 자격을 인정합니다.
- 7) 전문학술지 게재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게재승인이 미완료 상태인 경우에는 '게재증빙 미제출 사유서(서식자료실 56)를 제출하면 논문심사 자격을 사전 부여하고 제출유보기간(6월/12월 셋째주 금요일)을 정하여 서류보완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석·박사 통합과정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연구계획서 심사 또는 공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2) 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이수학점표 참조)
- 3) 8학기 이상 등록한 자
- 4) **의학과 SCIE에 논문을 발표한 자**
 - ※ 2010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학위논문 영어작성 의무화
- 5) 발표한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학생이 단독 제1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CA)인 경우에만 학위논문으로 인정(공동 교신저자 인정)
- 6) **의생명·건강과학과 전일제 학위논문은 SCIE 2편 이상을 제출한 자 또는 IF 3.0 이상 1편을 제출한 자(단, 학생이 단독 제1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CA)인 논문으로 한다.)**
 - ※ 공동 제1저자 : IF 5.0 이상 또는 해당 학문분야 상위 10% 이내의 논문을 제출할 경우 인정
 - ※ 공동 제1저자인 경우 : 2명 중 1명만 자격을 인정.

7. 학위논문 제출 시기 및 심사

가. 연구계획서 심사 후 학위논문 청구(단, 의무사항 없는 경우)

- 1) 석사학위논문
 - 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구분하되 병행하여 예비심사 후 본심사를 실시합니다.
 - 나)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찬성과 100점 만점에 평균 80 점 이상을 획득할 경우에 합격으로 합니다.
- 2) 박사학위논문
 - 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구분하되 병행하여 예비심사 후 본심사를 실시합니다.
 - 나) 예비심사 때는 논문 제출자가 논문내용을 발표하고 심사위원은 논문과 발표내용에 대한 평가를 채점하여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4인 이상 찬성) 이상을 획득한 자에 대하여 본심사를 진행하고, 본심사 때는 구술시험을 시행하며 최종 합격에 대하여 4인 이상 찬성할 경우에 합격으로 합니다.

나. 발표된 논문으로 학위논문 청구

- 1) 석사학위논문 심사
 - 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구분하되 병행하여 예비심사 후 본심사를 실시합니다.
 - 나)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찬성과 100점 만점에 평균 80 점 이상을 획득할 경우에 합격으로 합니다.
- 2) 박사학위논문 심사
 - 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구분하되 병행하여 예비심사 후 본심사를 실시합니다.
 - 나) 제출자가 논문내용을 발표하고 심사위원은 논문과 발표내용에 대한 평가를 채점하며, 심사위원 4명이상 찬성과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합니다.

★ **[주의사항]** 의학과 박사과정, 의생명·건강과학과 박사과정, 융복합의과학과는 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연구계획서 필수 심사 대상이므로 의무사항이 없을 시에도 학위논문 청구 전 반드시 연구계획서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다. 접수 및 심사기간

구분	접수기간	심사기간	<심사 후 서류> 제출마감
석사학위	3.21(월) ~ 5.20(금)	3.21(월) ~ 5.31(화)	~ 6.3(금)
박사학위			

▶ <심사 후 서류> 미제출 시 인준 보류

라. 제출서류

심사 전 서류	심사 후 서류
1. 논문심사 신청서(인터넷 입력) 1부 2. 연구윤리 서약서(서식자료실 43번) 1부 3. IRB심사결과통보서(서식자료실 31번) 1부 4. 논문표절 점검확인서(서식자료실 37) 1부 5. 발표논문별책(해당자) 1부 6. 심사료(석사 250,000원, 박사 620,000원)	1. 각 심사 채점표 (심사위원장 제출) 각 1부 2. Hard Cover (인준 국문도장, 영문서명) 2권 3. 심사요지 (심사위원장 확인, 서식자료실 34번) 1부 4. 논문 최종파일 (이메일 gseui@catholic.ac.kr) 1부 5. 학위논문이용동의서 (서식자료실40번) 1부 6. 외부심사위원 개인정보동의서(서식자료실33번) 1부 7. 의생명·건강과학과 박사 학위논문 발표 (동영상 mp4파일) 1부

- ※ 논문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의 학위논문 작성요령 참조
 ※ 학위논문 제출 방법 : 학위 심사논문 파일을 종합포탈시스템(uPortal) 온라인 업로드

마. 논문 제출시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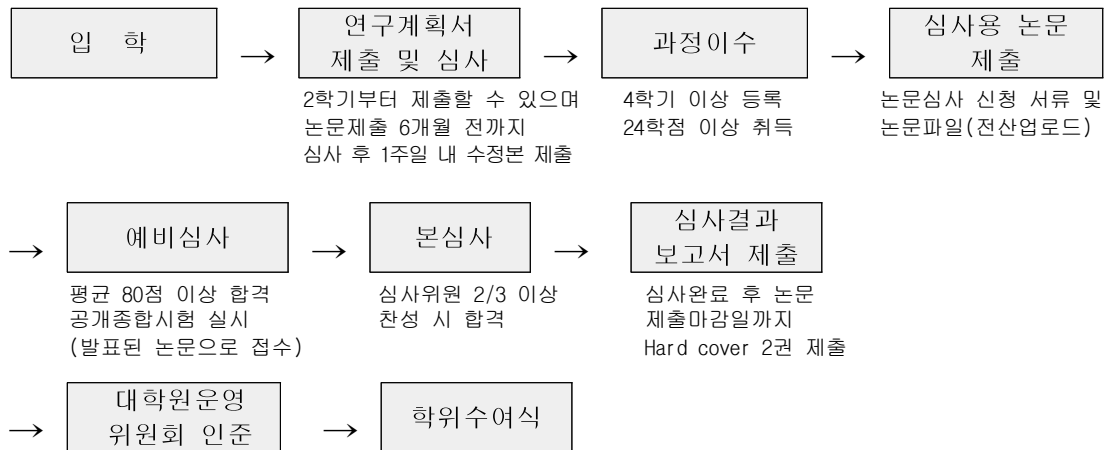
석사과정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 박사과정은 입학일로부터 10년 이내, 석·박통합과정은 입학일로부터 12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단, 군복무 기간(증빙서류 제출자) 및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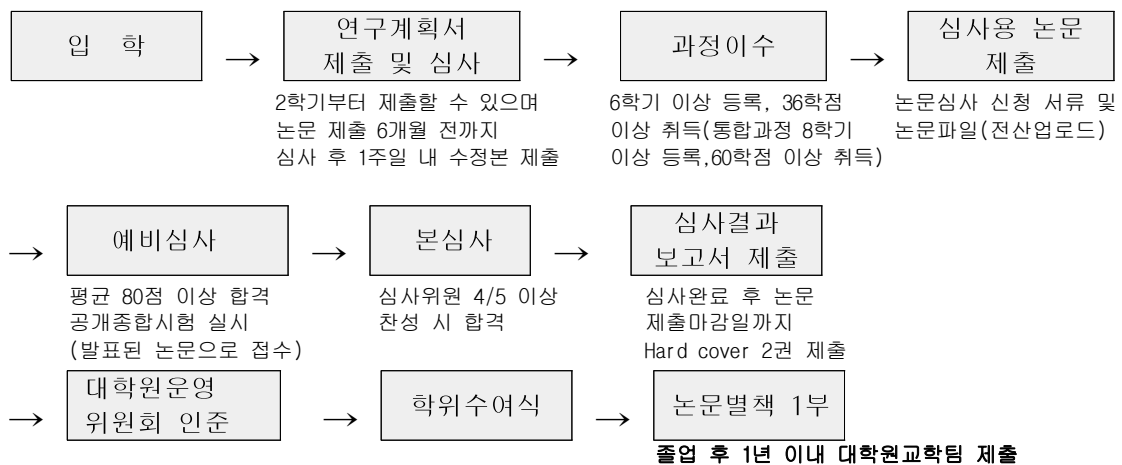
8. 학위논문 업무 흐름도

■ 연구계획서 심사 후 학위논문 청구(단, 의무사항 없는 경우)

가. 석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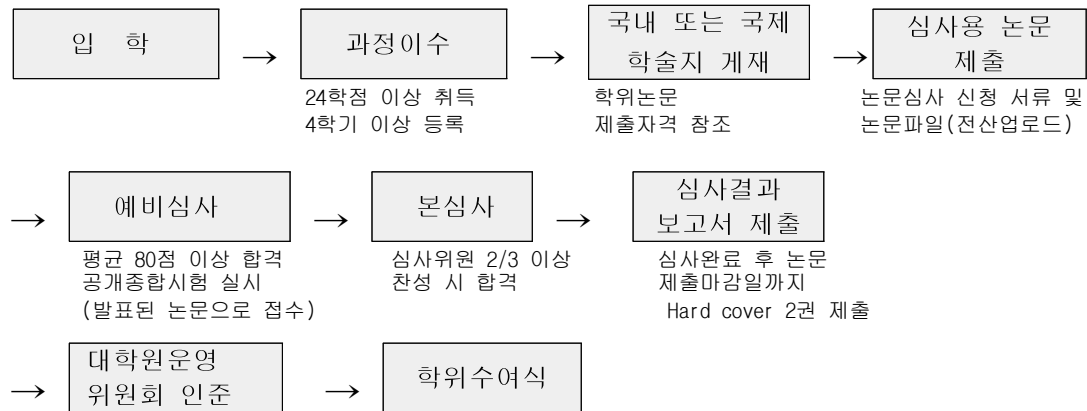


나.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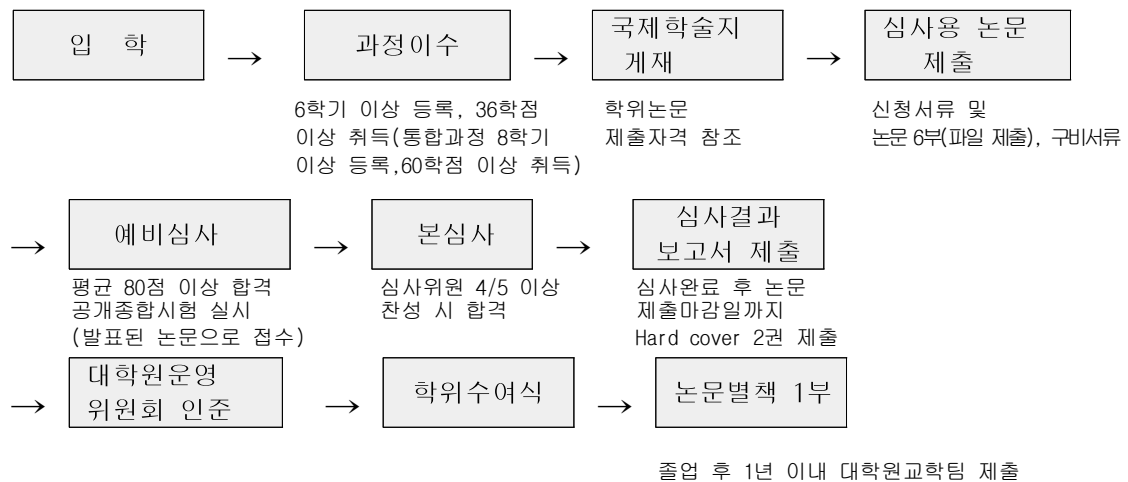


■ 발표된 논문으로 학위논문 청구

가. 석사과정



나. 박사과정



- ※ 전문학술지 게재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게재승인이 미완료 상태인 경우에는 ‘게재증빙 미제출 사유서(서식자료실 56)’를 제출하면 논문심사 자격을 사전 부여하고 제출유보기간(6월/12월 셋째주 금요일)을 정하여 서류보완제출이 가능합니다.
- ※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휴학 및 복학

☎ 담당자 문의전화(2258-7086)

가. 휴학 (학칙 제17조 및 시행세칙 제11조)

- 1)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입대 휴학, 임신, 출산 및 육아 휴학으로 구분한다.
- 2) 일반휴학은 1회 2학기(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입대 휴학, 임신, 출산 및 육아 휴학은 예외로 한다.
- 3) 휴학 시에는 휴학원과 증빙서류(입영통지서, 진단서, 가족관계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복학 (학칙 제18조 및 시행세칙 제11조)

- 1)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다음 학기 등록기간 전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한다.

※ 군입대 휴학한 학생 : 전역증명서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제출

- 2) 복학이 허가된 학생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재입학 (학칙 제11조 및 시행세칙 제9조)

- 1) 제적 또는 자퇴한 학생은 본인이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제적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재입학할 수 있다.
- 2) 정원관리상 입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재입학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교학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가. 주차 정기관(번호인식) 및 현금할인

- 1) 대 상 : 일반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대학원생

- 2) 대학원생 정기관 및 현금할인 요금

※ 재학생에 한하며, 휴학생 및 수료생은 해당사항 없음

구 분	정기관	현금 할인
일반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 1학기(6개월): 120,000원	• 입차 후 3시간부터 일일권(1만원) 적용 단, 2시간 45분까지는 일반요금 적용 ※ 시행시기: 2021.8.1일부터
지정주차구역	• 별관 지하 2,3층 • 냉각타워 주차장	차량요일제 (5부제) 주중 1일 주차제한(차량끝번호로 구분) 월(0,1,6) 화(2,5,7) 수(3,8) 목(4,9) 금(없음)
기 타	• CMC 직할기관 및 비직할기관 교직원(전공의 포함) 정기관/현금할인 사용 불가 • 반드시 정기관 신청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일 이후 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3) 정기관 발급 문의 : 서울성모병원 B3 주차관제소(02-2258-6000)

나. 진료비 감면 혜택

- 1) 감면내용

감면범위 및 감면율 (보험 및 일반환자 동일)	감면적용 병원
- 초진료, 재진료 100% -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의 30%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8개 부속병원 - 서울성모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은평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성빈센트병원 - 대전성모병원

- 2) 감면대상 : 재적생(재학생+휴학생) 본인에 한함
- 3) 학생감면확인서를 해당병원 접수 시에 제출하여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성모병원, 대전성모병원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4) 진료 시 대학원교학팀(02-2258-7073~4, 7086)으로 연락하여 감면번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건강검진 할인 혜택

- 1) 감면대상 :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대학(원)생 및 직계가족
- 2) 감면내용 :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 건강검진 프로그램 10% 할인
- 3) 확인절차
 - 본인 : 학생증 또는 대학(원) 재증명
 - 직계가족 : 학생증 또는 대학(원) 재증명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4) 예약전화 : 1588-1688

라. 학생증 발급

- 1) 학생증(우리은행 ID카드)은 대학원교학팀에 신청하여 발급
- 2) 신청기간 : **2022.01.26(수) - 28(금)**
 - ※ 신청기간 외에는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우리은행에 직접 신청
- 3) 학생증 용도
 - 도서관 이용 : 별도의 등록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함
 - 식당 이용 : 학생증 수령 후 식당 내 영양사 사무실에서 학생증을 등록하고 식당 입구의 충전기에서 충전을 한 후 사용 가능함
 - 체크카드 이용 :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우리은행 방문하여 신청 후 사용 가능함
 - 의학과 합동강의, 의생명·건강과학과 생명의과학세미나 수업 출석 확인 시 필요

마. 도서관 이용 (장소 : 성의회관 9층~11층)

- 1) 개관 및 열람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연중 개관 일정	
요일	월 ~ 금	토, 일, 공휴일
자료실(10~11층)	07:30 ~ 20:00	휴 관
열람실(9층)	연중무휴(24시간 개방)	

- 2) 이용자 준수사항
 - 도서관 출입 및 자료 이용 시에는 반드시 학생증을 소지해야 함
 -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분실 시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우리은행에서 재발급 받아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로 인한 피해는 본인이 책임져야 함.
 - 종합학습실을 제외하고는 개인 소지품은 휴대할 수 없음.
 - 자퇴 및 휴학 시에는 반드시 도서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의교정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cuk.ac.kr>)를 이용하시기 바람.

바. 예비군 전입신고

- 1) 대 상 :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자(예비군 1~8년차)
- 2) 기 간 : **2022.03.07(월) - 11(금), 1주간**
- 3) 방 법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상단 uPortal
(<https://uportal.catholic.ac.kr>) → 학사정보 → 대학원학적/졸업/재증명
→ 예비군 → 전입신고등록
※ 반드시 하단 저장을 클릭하여야 신고가 됩니다.
- 4) 기 타 : 대학원 과정(수료/졸업 등 포함)중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반드시 예비군 중대에 신고(재직증명서 첨부)하시기 바람, 기타 문의 사항은 성의교정 총무팀(병원별관 1층) 예비군 대대장(02-2258-71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 증명서 발급

종 류	방 법	발급장소, 시간	비 고
방문 발급	대학원교학팀에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 신청 (단, 대리인 발급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 확인)	- 성의회관 1층 커피안젤로 옆 증명서 자동발급기(24시간 가능) - 대학원교학팀(병원별관 1층) 근무시간 내(평일 08:00~17:00)	[증명수수료] 국문 : 1통 1,000원 영문 : 1통 2,000원
동사무소 Fax 민원 발급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증명신청 을 하면 Fax로 처리	소요시간 : 1시간 이내	
인터넷 신청 (우편 발송)	U-Portal(신청서)의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필요한 증명수수료 및 우편요 금을 송금하면 확인 후 즉시 발급	보통등기 : 3~4일 익일등기 : 1~2일	[온라인계좌번호] • 대학원, 특수대학원 우리은행 255-001232-13-062 (예금주명 : 가톨릭 대학교 성의교정)
인터넷 신청발급 (가정에서 직접출력)	※ 증명발급 사이트: http://catholic1.certpia.com 에 접속하여 실명인증 신규등록 및 회원 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플로그인을 다운 받아 설치하여야 함. ※ 영문 증명서의 경우에는, 영문이름이 없으면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하오니 가톨릭종합포탈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후 학생 신상내역 수정에서 영문 성명을 꼭 확인(수정) 후 발급. ※ 문의사항 : 02-2258-7074		

아. 학생상담센터 이용

학생상담센터는 대학원 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와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도움
을 드리기 위한 상담기관입니다.

모든 비용은 무료이며, 비밀은 보장됩니다.

- 1) 프로그램 :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 2) 운영시간 : 월, 화, 수 13:00~21:00 / 목, 금 09:00~18:00
- 3) 장 소 : 성의회관 2층 207호 학생상담센터
- 4) 문 의 : 02-2258-7052(counseling@catholic.ac.kr)

※ 이메일로 사전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medicine.catholic.ac.kr/html/info/consulting.jsp>

자. 대학 시설 이용

- 1) 강의실 기자재 불편사항 연락처 : 연구기술지원팀 02-2258-7197
- 2) 강의실 냉.난방 관리실 연락처 : 시설팀 02-2258-5555
- 3) 마이크 및 빔포인터 배터리 교환 : 성의회관 1층 안내실 02-2258-7680
- 4) 성의회관 건물 노트북 사용 시 Wi-Fi 비번 : lguplus100

차. 전일제 학생

- 1) 전일제(신입생 및 재학생) 학생은 서약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재학기간 동안 서약서 내용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지도교수가 부과하는 연구업무를 보조하며, 수강 및 연구보조
등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2)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도교수 또는 근무
기관장의 요청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카. 휴직원, 복직원 제출

우리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은 박사과정에 재학할 수 없습니다.

재학 중에 전임교원으로 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무팀(02-2258-7086)에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료 시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성의교정 대학원 인권위원회 신고 접수

1) 성의교정 대학원 인권위원회란?

성의교정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관련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 연구 및 학내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관련사건 및 고충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2) 적용범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성의교정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관련 구성원인 경우

3) 신고 내용

인권침해, 고충민원, 성희롱, 성폭력 등

4) 신고 절차

피해자는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신고서와 진술서 양식을 작성하여 대학원교학팀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신고가 접수 되며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5) 담당자 연락처 : 02-2258-7073 / E-mail : smlcmc@cmcnu.or.kr

- 신고서(양식) : 대학원홈페이지 서식자료실 52번

11. 대학원 학위 논문 IRB 심사

1. 대학원 교과과정 중 본인의 연구가 인간 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시체 이용 연구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IRB 심사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연구계획 단계에 IRB 심사면제 또는 승인을 득한 후 연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법과 시체해부법은 IRB가 반드시 사전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대학원 논문심사는 성의교정에 설치된 “임상연구심사위원회(IRB)”에서 심사합니다. 단,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이더라도 연구대상자가 본교가 아닌 외부에 소속되어 있고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가 속한 기관에 IRB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IRB에 심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자

성의교정 IRB에 대학원생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계획서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은 책임연구자**가 되며, **지도교수는 공동책임연구자**가 됩니다. 대학원생은 책임연구자로서 가톨릭중앙의료원 임상연구윤리규정(https://eirb.cmcnu.or.kr/irb_chrpp.do)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4. 심사 관련 정보

가. 구체적인 IRB 관련 안내 및 서식 다운로드 IRB 홈페이지 (<http://eirb.cmcnu.or.kr>) 게시글을 참조하시거나 각 대학원 자료실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의교정 임상연구심사위원회(IRB) 심사일정

1) 정규심사 : 매월 두번째 수요일(월 1회) 개최

2) 신속심사 : 월 4회 (평균 주1회)

3) 심사자료 접수마감 **기한안내**

※ 정규심사 기준 : 정규심사일(매월 2번째 주 수요일) 기준 2주전 까지 CTSC 시스템(온라인)으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신속심사 기준 : 신속심사일 기준, 7일 전까지 CTSC 시스템(온라인)에 제출된 것으로 사무국에서 확인된 과제에 한하여 심사 진행합니다.

4) 제출처 : 성의교정 연구윤리사무국(서울성모병원 별관 2층)

- 연락처 02-2258-8212, 7792(사무실), 02-2258-8213(FAX)

- 이메일 : irbcumc@catholic.ac.kr

5) 심사비

신규 연구계획서	심사면제	20,000 원
	신속심사	50,000 원
	정규심사	50,000 원
지속심사	정규심사 or 신속심사	30,000 원

- 계좌번호 : 1005-601-617716

- 입금은행 : 우리은행

- 예 금 주 :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 입금시, 입금자명은 **책임연구자 성함**과 **과제번호 뒷자리 3개**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 홍길동-107

★ 연구자 의무 사항

1. IRB 심사결과통보서를 받기 전까지 해당 연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2. 책임연구자는 직접 연구를 수행하거나 그 수행과정을 감독하여야 합니다.

가. IRB가 승인한 연구계획서와 일치되게 연구를 수행하십시오.

나. IRB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대상자의 동의 혹은 허락이 IRB가 승인한 현재의 연구계획서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다음 사항은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IRB에 제출하십시오.

가. 변경심사신청서 : 초기 승인된 연구계획서 내용 외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사전에 IRB **변경심의를 받은 이후 연구수행 하십시오**

나. 지속심사신청서: 심사결과통보서에 기술된 승인만료일을 기준으로 승인만료일 2개월 이전까지 지속심사신청서 제출

다. 임상연구의 종료보고서 :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었거나, 더 이상의 추가 수집 없이 연구 분석만을 남겨둔 상태, 또는 연구가 종료되었을 때 제출 (IRB 승인만료일 2개월 전까지 제출)

※ 단, 심사결과가 심사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속심사신청서 또는 연구종료보고서 제출 의무 없음.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임상연구심사위원회(IRB) 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CMC CTSC (<https://eirb.cmcnu.or.kr>)로 접속하여 직접 회원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가. ID 발급 이력이 없는 대학원생이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심사를 위해 회원 가입하는 경우, 가입시 ‘회원구분’ 항목을 ‘연구자(외부, 학생)’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 :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검색/ 부서 : 소속 대학원 및 전공 기재(ex. 대학원

000 전공) / 직위 : 학생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추후 해당 연구윤리사무국 행정인 확인 후, 승인 처리하면 로그인 가능합니다.

(근무일 기준 : 약 1~2일 소요)

* 내부 교직원 또는 기존 CTMS(구 e-IRB)에서 ID 발급 받은 연구자는 별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기존 ID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2. 신규과제 신청 안내

1) 신규과제 신청서 작성

2) IRB 홈페이지(<http://eirb.cmcnu.or.kr>) > 자료실 > CMC 서식에서 연구종류별

연구계획서 서식 택일하여 다운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가 있는 연구인 경우,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template'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CMC 온라인 교육 (<https://www.celp.co.kr/CELP/servlet/ContentManager>)

진행중인 교육과정 항목에서 연구에 해당되는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과정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을 CTSC 시스템 연구자 계정의 '교육이수현황관리' 메뉴에 등록해주시요.

4. 신규 과제 작성 시 유의사항

대학원생이 본인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IRB 심사 신청하는 경우, 대학원생은 책임연구자, 지도 교수는 공동책임연구자로 등록해주시고 지도 교수의 '연구수행업무내용' 항목에 16번(책임연구자의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함)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5. 연구자 이수 과정목록[개정일 2020.02.03.]

(1) 의무기록, 설문조사 연구자 → CHRPP 이수

(2) 의약품 연구자 → CHRPP + GCP

(3) 의료기기 연구자 → CHRPP + 의료기기

(4) 인체유래물 연구자 → CHRPP + 생명윤리

(5) IRB위원 → IRB위원 + GCP + 생명윤리 + 의료기기

2022학년도 1학기

학과별 이수학점 및 강의시간표

12. 교시별 강의시간표

1교시 : 07:00 - 07:50	2교시 : 08:00 - 08:50	3교시 : 09:00 - 09:50
4교시 : 10:00 - 10:50	5교시 : 11:00 - 11:50	6교시 : 12:00 - 12:50
7교시 : 13:00 - 13:50	8교시 : 14:00 - 14:50	9교시 : 15:00 - 15:50
10교시 : 16:00 - 16:50	11교시 : 17:00 - 17:50	12교시 : 18:00 - 18:50
13교시 : 19:00 - 19:50	14교시 : 20:00 - 20:50	15교시 : 21:00 - 21:50

13. 학과별 이수학점 및 강의시간표

▶ 간호학과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비 고
필 수	전 공	18 학점	18 학점	
	학위논문세미나	2 학점	3 학점	
선 택		6 학점	15 학점	
계		26 학점	36 학점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간 호 학 과	석사 필수	Nurs512	윤리적 연구와 논문 작성	3	금요일 09교시~11교시	이향열
		Nurs513	통계학	3	금요일 06교시~08교시	김승주
		Nurs531	석사학위논문세미나	1	금요일 02교시~02교시	지도교수
		Nurs532	연구방법론	3	금요일 03교시~05교시	조민정
		Nurs533	임상간호세미나	3	금요일 03교시~05교시	유양숙
		Nurs534	개념과 측정	3	금요일 09교시~11교시	김수정
		Nurs535	간호이론	3	금요일 06교시~08교시	강민정
		Nurs536	가족건강세미나	3	금요일 06교시~08교시	나현주
	선택	Nurs605	건강행위론	3	금요일 09교시~11교시	이종은
		Nurs633	교육평가	3	금요일 03교시~05교시	김정희
		Nurs661	보건의료 질 관리 이론과 적용	3	금요일 03교시~05교시	박미현
		Nurs667	이차자료분석	3	금요일 03교시~05교시	김희주
		Nurs683	여성건강문제 이론과 실제	3	금요일 06교시~08교시	이주영
	박사 선택	Nurs684	연구도구개발	3	금요일 06교시~08교시	영혜아
		Nurs687	빅데이터와 간호	3	금요일 09교시~11교시	이선미
	박사 필수	Nurs722	간호과학과 철학	3	금요일 03교시~05교시	이경주
		Nurs731	박사학위논문세미나	1	금요일 02교시~02교시	지도교수
		Nurs732	고급연구방법론	3	금요일 09교시~11교시	박한중
		Nurs735	질적연구방법론	3	금요일 06교시~08교시	이선희

▶ 보건학과

구 분		박사과정	비 고
필 수	전 공	9 학점	
	초 독	4 학점	
선 택	타 학과 전공과목 포함	23 학점	
계		36 학점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보 건 학	선 택	Heal406	환경역학세미나	2	수요일 13교시~14교시	배상혁
		Heal407	고급정신역학	2	수요일 13교시~14교시	정현숙
		Heal408	보건의료체계	2	수요일 07교시~08교시	이후연
		Heal647	안전간호와 행동심리	2	월요일 14교시~15교시	정혜선
		Heal651	e-healthcare	2	화요일 14교시~15교시	김석일
		Heal666	일반보건의료정보학 세미나 I	2	목요일 12교시~13교시	김석일
		Heal676	체계적고찰	2	수요일 07교시~08교시	임현우
		Heal677	의사결정지원	2	목요일 14교시~15교시	김석일
		Heal698	고급산업위생세미나	2	수요일 07교시~08교시	최상준
	박사 필수	Heal701	박사초독	1	수요일 12교시~12교시	임현우
		Heal703	고급역학	3	수요일 09교시~11교시	임현우

▶ 의학과

1. 2020학년도 후기까지 이수학점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필 수	전 공	6 학점	9 학점	15 학점(석사6+박사9)
	초 독	2 학점	3 학점	4 학점(석사2+박사2)
	합동강의	3 학점	6 학점	9 학점
부전공	타학과(전공) 필수과목	6 학점	6 학점	9 학점
선 택	전공선택+기타과목	7 학점	12 학점	23 학점
계		24 학점	36 학점	60 학점

※ 부전공은 필히 동일전공 필수과목에서 취득하여야 합니다.

※ 석.박 통합과정은 석사과정 교과목 수강 후 박사과정 교과목 수강 바랍니다.

2. 2021학년도 전기 이후 입학생 이수학점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필 수	전 공	6 학점	9 학점	12 학점(석사6+박사6)
	초 독	2 학점	3 학점	4 학점(석사2+박사2)
	합동강의	3 학점	6 학점	9 학점
부전공	타학과(전공) 필수과목	6 학점	6 학점	9 학점
선 택	전공선택+기타과목	7 학점	12 학점	20 학점
계		24 학점	36 학점	54 학점

※ 합동강의 담당교수 : 교학부장

구분	학수번호	과 목 명	학점	요일	online 공개 시간	강의유형
필수	09010	합동강의 I (New Horizons in Medical Research I)	3	화	19:00	온라인강의 (cyber campus)

일자		연자	소속	제 목
1	3월8일	이석형	성의교정 병리학교실	오리엔테이션
		조희정	한국여성민우회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2	3월15일	이우영	성의교정 해부학교실	법의인류학과 얼굴복원
3	3월22일	정찬권	서울성모병원 병원병리학교실	슬기로운 디지털 슬라이드 이미지 활용
4	3월29일	김지윤	성의교정 약리학교실	The role of the Golgi apparatus in disease
5	4월5일	홍동완	성의교정 의료정보학교실	Cancer genome database & analysis toolkit
6	4월12일	홍성후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1. Clinical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renal cell carcinoma 2. Radiomics as a novel approach to improved characterization of small renal masses
7	4월19일	정승현	성의교정 생화학교실	단일세포 분석을 통한 면역세포 이질성 탐구
8	4월26일	김인호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Cancer immunotherapy
9	5월3일	성원모	성의교정 의공학교실	수리 모델과 머신 러닝을 이용한 가상 임상시험
10	5월10일	유승아	성의교정 의생명과학학교실	관절질환 활막세포의 이동과 침습에 대한 연구
11	5월17일	이상영	가톨릭대학교 기술지주	지식재산권 창출과 창업
12	5월24일	김용균	성빈센트 내과	The application of human iPSCs-derived Kidney organoids
13	5월31일	김명신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Recent update of molecular techniques for precision medicine
14	6월7일	박혜영	서울성모병원 안과	안과 영역에서의 Medical Research
15	6월14일	이석형	성의교정 병리학교실	기말시험/마리아홀

※ 성적산출: 출석 50% + (필기시험 + 기타평가) 50%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해부학	석사 필수	Mana501	석사초독	1	수요일 08교시~08교시	김동하
		Mana504	조직화학	3	금요일 07교시~09교시	오수자
	선택	Mana604	체질인류학	2	수요일 08교시~09교시	김이석
	박사 필수	Mana701	박사초독	1	수요일 12교시~12교시	김인범
		Mana704	신경해부학 특강	3	화요일 07교시~09교시	이문용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생리학	석사 필수	Mphy501	석사초독	1	금요일 02교시~02교시	윤신희
		Mphy506	세포생리학 II	3	화요일 10교시~12교시	이은희
		Mphy507	신경생리학	3	금요일 10교시~12교시	장현중
	선택	Mphy610	소화생리학	2	화요일 11교시~12교시	김명준
		Mphy611	분자신경생물학	2	수요일 11교시~12교시	윤신희
	박사 필수	Mphy701	박사초독	1	금요일 02교시~02교시	이덕주
		Mphy706	감각생리학일반	3	목요일 10교시~12교시	이덕주
		Mphy707	호흡기능조절	3	금요일 10교시~12교시	한상준
		Mphy708	내분비기능조절	3	수요일 10교시~12교시	김명준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생화학	석사 필수	Mbch501	석사초독	1	화요일 11교시~11교시	정승민
		Mbch502	일반생화학	3	수요일 04교시~06교시	이은경
		Mbch506	신호변환	3	수요일 07교시~09교시	김호식
	선택	Mbch640	Programmed cell death	2	월요일 07교시~08교시	이정화
		Mbch643	유전자발현생화학	2	월요일 09교시~10교시	정승현
		Mbch644	유전자 분석 생화학	2	월요일 11교시~12교시	정승현
	박사 필수	Mbch701	박사초독	1	목요일 13교시~13교시	정성한
		Mbch704	분자유전학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김호식
		Mbch705	종양생화학	3	목요일 10교시~12교시	이은경
		Mbch707	생화학특강	3	금요일 07교시~09교시	정승민
		Mbch708	대사 생화학	3	금요일 10교시~12교시	이정화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병리학	석사 필수	Mpat501	석사초독	1	금요일 09교시~09교시	김수영
		Mpat502	일반병리학	3	월요일 07교시~09교시	김수영
		Mpat503	염증병리학	3	화요일 07교시~09교시	유남진
	박사 필수	Mpat701	박사초독	1	금요일 10교시~10교시	이성범
		Mpat702	분자병리학	3	수요일 07교시~09교시	이석형
		Mpat704	종양병리학	3	목요일 07교시~09교시	유남진
		Mpat705	실험병리학	3	목요일 10교시~12교시	이석형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약리학	석사 필수	Mpha501	석사초독	1	금요일 01교시~01교시	임동석
		Mpha508	코딩을 활용한 PK/PD 자료처리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한승훈
		Mpha509	약동학을 위한 수리통계학	3	금요일 12교시~14교시	한승훈
	박사 필수	Mpha701	박사초독	1	금요일 01교시~01교시	한승훈
		Mpha708	생리학적 약동학	3	금요일 12교시~14교시	임동석
		Mpha709	계량약리학 심화과정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임동석
		Mpha710	임상개발을 위한 규제과학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한승훈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미생물학	석사 필수	Mmic501	석사초독	1	목요일 06교시~06교시	김태규
		Mmic503	면역생물학	3	화요일 10교시~12교시	김태규
		Mmic505	미생물학	3	수요일 10교시~12교시	홍승진
	선택	Mmic612	일반 바이러스학	2	월요일 01교시~02교시	서상욱
		Mmic614	임상 바이러스학	2	수요일 03교시~04교시	서상욱
		Mmic622	비교유전체학	2	월요일 10교시~11교시	정연준
	박사 필수	Mmic701	박사초독	1	금요일 05교시~05교시	정연준
		Mmic703	최신면역학	3	금요일 10교시~12교시	김태규
		Mmic706	최신바이러스학	3	화요일 02교시~04교시	서상욱
		Mmic707	응용미생물학	3	목요일 10교시~12교시	홍승진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예방의학	선택	Mpre641	체계적 고찰	2	수요일 07교시~08교시	임현우
		Mpre655	일반보건의료정보학세미나	2	목요일 12교시~13교시	김석일
		Mpre657	e-healthcare	2	화요일 14교시~15교시	김석일
		Mpre659	의사결정지원	2	목요일 14교시~15교시	김석일
		Mpre665	환경역학세미나	2	수요일 13교시~14교시	배상혁
		Mpre666	고급정신역학	2	수요일 13교시~14교시	정현숙
		Mpre667	보건의료체계	2	수요일 07교시~08교시	이후연
	박사 필수	Mpre701	박사초독	1	수요일 12교시~12교시	임현우
		Mpre706	고급역학	3	수요일 09교시~11교시	임현우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내과학	석사 필수	Minm501	석사초독	1	월요일 12교시~12교시	박철휘
		Minm504	감염질환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위성현
		Minm505	종양학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이명아
		Minm508	내과학 특강 I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이진국
	선택	Minm607	소화기질환	2	수요일 12교시~13교시	박재명
	박사 필수	Minm701	박사초독	1	화요일 12교시~12교시	김완옥
		Minm703	혈액학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김희제
		Minm705	호흡기질환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이상학
		Minm706	내분비질환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권혁상
		Minm708	내과학 특강 II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이진국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신경과학	석사 필수	Mner501	석사초독	1	수요일 12교시~12교시	조아현
		Mner502	신경학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이상봉
		Mner503	신경해부학	3	금요일 12교시~14교시	이광수
		Mner505	신경과학 특강 I	3	월요일 13교시~15교시	박정욱
	선택	Mner612	운동성 이상질환	2	목요일 14교시~15교시	송인욱
		Mner615	탈수초성 질환	2	수요일 12교시~13교시	김우준
		Mner617	치매 및 관련질환	2	금요일 14교시~15교시	심용수
	박사 필수	Mner701	박사초독	1	금요일 14교시~14교시	류선영
		Mner702	신경전기 생리학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정성우
		Mner704	신경화학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양동원
		Mner705	신경과학 특강 II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김중석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정신과학	석사 필수	Mpsy501	석사초독	1	목요일 11교시~11교시	홍승철
		Mpsy507	정신과학 특강 I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김대진
	선택	Mpsy613	인지행동치료개론	2	월요일 04교시~05교시	채정호
		Mpsy614	연구 기초 및 적용론	2	화요일 11교시~12교시	전양환
	박사 필수	Mpsy701	박사초독	1	화요일 13교시~13교시	박원명
		Mpsy703	노인정신의학	3	목요일 13교시~15교시	이창욱
		Mpsy709	중독정신의학	3	화요일 01교시~03교시	김대진
		Mpsy710	정신과학 특강 II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김대진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외과학	석사 필수	Msur501	석사초독	1	토요일 01교시~01교시	유영경
		Msur502	일반외과학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김성근
		Msur503	수분 및 전해질균형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오세정
		Msur504	외상학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조진범
		Msur505	외과학 특강 I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이도상
	선택	Msur604	항암화학 요법	2	수요일 12교시~13교시	전경화
		Msur609	외과병리학	2	수요일 12교시~13교시	이윤석
		Msur610	외과내분비학	2	수요일 12교시~13교시	배자성
	박사 필수	Msur701	박사초독	1	토요일 01교시~01교시	오승택
		Msur702	외과종양학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송교영
		Msur703	장기이식학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박순철
		Msur705	외과대사학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최승혜
		Msur706	외과학 특강 II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윤상섭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정형외과학	석사 필수	Mors501	석사초독	1	화요일 12교시~12교시	송주현
		Mors502	골대사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임영욱
		Mors504	외상학(상하지 및 척추)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권순용
		Mors505	정형외과학 특강 I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김석중
	선택	Mors608	노인성질환	2	화요일 12교시~13교시	김양수
		Mors621	생체재료학	2	목요일 12교시~13교시	정양국
		Mors622	인공관절역학	2	금요일 12교시~13교시	인용
	박사 필수	Mors701	박사초독	1	월요일 12교시~12교시	송현석
		Mors702	말초신경학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서유준
		Mors703	관절역학	3	금요일 12교시~14교시	정진영
		Mors706	정형외과학 특강 II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이주엽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신경외과학	석사필수	Mnes501	석사초독	1	토요일 02교시~02교시	성재훈
		Mnes502	신경해부학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홍재택
		Mnes503	신경외과학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류경식
		Mnes504	신경과학	3	금요일 12교시~14교시	조정기
		Mnes506	신경외과학 특강 I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박해관
	선택	Mnes601	중추신경계외상	2	화요일 12교시~13교시	이관성
		Mnes603	중추신경계혈관질환	2	수요일 12교시~13교시	신용삼
		Mnes604	중추신경계종양학	2	목요일 12교시~13교시	김종태
	박사필수	Mnes701	박사초독	1	토요일 03교시~03교시	양지호
		Mnes702	신경해부학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박익성
		Mnes703	신경생리학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유도성
		Mnes704	신경병리학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손병철
		Mnes707	신경외과학 특강 II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박해관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흉부외과학	석사필수	Mths501	석사초독	1	금요일 12교시~12교시	김재준
		Mths503	흉부.호흡기 및 순환기해부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최시영
		Mths504	흉부외상의 치료	3	금요일 12교시~14교시	문영규
		Mths506	흉부외과학 특강 I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문석환
	선택	Mths613	심장 및 폐장 이식술	2	금요일 14교시~15교시	김경수
		Mths614	심장 및 폐장 태생학	2	목요일 12교시~13교시	김용환
		Mths615	호흡기 생리학 및 폐기능 검사	2	목요일 14교시~15교시	조덕곤
	박사필수	Mths701	박사초독	1	목요일 12교시~12교시	전현우
		Mths703	식도 및 폐장외과학	3	수요일 13교시~15교시	김영두
		Mths704	심장 및 혈관외과학	3	월요일 13교시~15교시	이종호
		Mths705	심장보조장치 및 인공심장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권종범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성형외과학	석사필수	Mpls501	석사초독	1	금요일 13교시~13교시	심형섭
		Mpls502	창상치유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이종호
		Mpls509	성형외과학 특강 I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정성노
	선택	Mpls609	수족부외과학	2	금요일 14교시~15교시	문석호
	박사필수	Mpls701	박사초독	1	월요일 15교시~15교시	이준용
		Mpls705	미용외과학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오득영
		Mpls706	레이저 외과학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전영준
		Mpls708	성형외과학 특강 II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변준희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마취통증의학	석사 필수	Mane501	석사초독	1	금요일 12교시~12교시	정은용
		Mane502	흡입마취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정현식
		Mane504	호흡생리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정규돈
		Mane505	부위마취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문호식
		Mane506	마취통증의학 특강 I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김창재
	선택	Mane601	산과마취학	2	목요일 12교시~13교시	홍상현
		Mane602	노인마취학	2	화요일 12교시~13교시	문영은
		Mane603	심폐소생법	2	수요일 12교시~13교시	채민석
	박사 필수	Mane701	박사초독	1	금요일 12교시~12교시	임경실
		Mane702	순환생리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정미영
		Mane704	통증생리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박휴정
		Mane705	마취약리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최진우
		Mane706	마취통증의학 특강 II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김창재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산부인과학	석사 필수	Mobg501	석사초독	1	목요일 12교시~12교시	김용욱
		Mobg502	일반생식생리학	3	목요일 13교시~15교시	김미란
		Mobg503	주산기학	3	목요일 13교시~15교시	박인양
		Mobg505	임상종양학	3	목요일 13교시~15교시	허수영
		Mobg506	산부인과학 특강 I	3	목요일 13교시~15교시	김민정
	박사 필수	Mobg701	박사초독	1	목요일 12교시~12교시	박동춘
		Mobg704	고위험산과학	3	목요일 13교시~15교시	이희중
		Mobg707	종양 바이러스학	3	목요일 13교시~15교시	김찬주
		Mobg709	생식내분비학	3	목요일 13교시~15교시	정인철
		Mobg710	산부인과학 특강 II	3	목요일 13교시~15교시	고현선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소아과학	석사 필수	Mped501	석사초독	1	월요일 12교시~12교시	윤종서
		Mped502	성장발육학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한지윤
		Mped504	소아예방의학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최의윤
		Mped505	소아과학 특강 I	3	금요일 12교시~14교시	전윤희
	선택	Mped604	소아순환기학	2	금요일 12교시~13교시	이재영
		Mped607	소아종양학	2	화요일 12교시~13교시	조빈
		Mped608	소아혈액학	2	목요일 12교시~13교시	이재욱
		Mped616	청소년의학	2	월요일 13교시~14교시	김영훈
	박사 필수	Mped701	박사초독	1	월요일 12교시~12교시	정대철
		Mped707	소아 감염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김종현
		Mped708	소아영양학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이정현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안과학	석사 필수	Moph501	석사초독	1	수요일 12교시~12교시	지동현
		Moph502	임상안과학	3	수요일 13교시~15교시	김은철
		Moph505	안과학 특강 I	3	수요일 13교시~15교시	나호
	박사 필수	Moph701	박사초독	1	수요일 12교시~12교시	나경선
		Moph704	신경세포학	3	수요일 13교시~15교시	박혜영
		Moph708	안병리학	3	수요일 13교시~15교시	조원경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이비인후과학	석사 필수	Motr501	석사초독	1	월요일 12교시~12교시	김병국
		Motr503	청각학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박경호
		Motr505	두경부 종양학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조광재
		Motr506	이비인후과학 특강 I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이동희
	선택	Motr601	소아이비인후과학	2	수요일 12교시~13교시	김수환
	박사 필수	Motr701	박사초독	1	월요일 12교시~12교시	박소영
		Motr703	내이평형기능 생리학	3	금요일 12교시~14교시	박시내
		Motr705	이비인후과영역에서면역학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김성원
		Motr706	후각생리학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박찬순
		Motr709	이비인후과학 특강 II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주영훈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피부과학	석사 필수	Mder501	석사초독	1	월요일 12교시~12교시	김미리
		Mder502	피부과학	3	수요일 13교시~15교시	강훈
		Mder504	면역학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박영민
		Mder506	피부과학 특강 I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박철중
	선택	Mder602	피부외과학	2	금요일 12교시~13교시	유동수
		Mder607	피부 광생물학	2	목요일 12교시~13교시	김혜성
		Mder612	노인피부과학	2	수요일 12교시~13교시	박철중
	박사 필수	Mder701	박사초독	1	목요일 12교시~12교시	김경문
		Mder703	피부병리조직학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이정덕
		Mder706	피부미생물학	3	금요일 12교시~14교시	이경호
		Mder707	피부생화학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조상현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비뇨의학	석사 필수	Muro501	석사초독	1	목요일 12교시~12교시	이승주
		Muro502	일반 비뇨기과학	3	금요일 12교시~14교시	하유신
		Muro503	비뇨기 해부학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김세웅
		Muro508	비뇨의학 특강 I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고준성
	선택	Muro601	비뇨기 태생학	2	목요일 12교시~13교시	한창희
		Muro608	요로폐색	2	금요일 12교시~13교시	서홍진
	박사 필수	Muro701	박사초독	1	금요일 12교시~12교시	김현우
		Muro702	신경인성 방광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김준철
		Muro703	비뇨기 병리조직학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이지열
		Muro708	요로결석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홍성후
		Muro709	비뇨의학 특강 II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손동완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방사선과학	석사필수	Mrad501	석사초독	1	수요일 12교시~12교시	김범수
		Mrad502	핵의학개론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최우희
		Mrad506	조영제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김보현
	선택	Mrad606	뇌신경계 핵의학	2	월요일 12교시~13교시	오주현
		Mrad611	신경방사선학	2	수요일 13교시~14교시	장진희
		Mrad613	간담도 방사선학	2	금요일 12교시~13교시	나성은
	박사필수	Mrad701	박사초독	1	목요일 12교시~12교시	정승은
		Mrad704	중재방사선학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천호종
		Mrad708	실험동물 방사선학	3	금요일 12교시~14교시	정준용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방사선종양학	석사필수	Mron501	석사초독	1	목요일 12교시~12교시	송진호
		Mron502	방사선생물학(정상조직)	3	금요일 12교시~14교시	장성순
		Mron505	온열요법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장홍석
		Mron506	방사선종양학 특강 I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김연실
	선택	Mron606	중추신경계방사선종양학	2	화요일 12교시~13교시	김성환
		Mron608	흉부방사선종양학	2	목요일 13교시~14교시	이윤희
		Mron609	소화비뇨생식기방사선종양학	2	금요일 12교시~13교시	이종훈
	박사필수	Mron701	박사초독	1	목요일 12교시~12교시	김성환
		Mron702	방사선종양학총론	3	목요일 13교시~15교시	송진호
		Mron703	방사선생물학(종양)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최병옥
		Mron704	임상방사선물리학	3	금요일 12교시~14교시	강영남
		Mron706	방사선종양학 특강 II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김연실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병 원 병 리 학	석사 필수	Mhop501	석사초독	1	수요일 12교시~12교시	박경신
		Mhop505	산부인과병리학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이아원
		Mhop506	소화기병리학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이성학
		Mhop508	병원병리학 특강 I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정찬권
	선택	Mhop603	신경병리학	2	목요일 13교시~14교시	이연수
	박사 필수	Mhop701	박사초독	1	목요일 12교시~12교시	정은선
		Mhop703	폐병리학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김태정
		Mhop704	림프내망계병리학	3	금요일 12교시~14교시	박경신
		Mhop705	신장병리학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최영진
		Mhop706	유방병리학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이아원
		Mhop707	두경부병리학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이연수
		Mhop708	골연부조직병리학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정찬권
		Mhop709	병원병리학 특강 II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이성학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진 단 검 사 의 학	석사 필수	Mlab501	석사초독	1	금요일 12교시~12교시	강지민
		Mlab502	진단검사의학 개론	3	금요일 12교시~14교시	김영식
		Mlab503	진단혈액학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김용구
		Mlab504	임상생화학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이제훈
		Mlab505	진단검사의학 특강 I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오은지
	선택	Mlab602	진단분자유전학	2	수요일 14교시~15교시	이승옥
		Mlab605	감염질환의 분자생물학	2	월요일 14교시~15교시	이혜경
		Mlab606	맞춤의학과 유전체 검사의학	2	목요일 14교시~15교시	김명신
	박사 필수	Mlab701	박사초독	1	월요일 12교시~12교시	김수영
		Mlab702	임상미생물학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박연준
		Mlab703	진단면역학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신소영
		Mlab704	수혈 및 혈액성분치료학	3	금요일 12교시~14교시	임지향
		Mlab705	진단검사의학 특강 II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박해일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재 활 의 학	석사 필수	Mreh501	석사초독	1	월요일 12교시~12교시	이종인
		Mreh502	물리학 개론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박근영
		Mreh503	재활의학 개론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김민욱
		Mreh505	재활의학 특강 I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김준성
	선택	Mreh601	뇌졸중의 재활	2	금요일 12교시~13교시	임성훈
		Mreh603	관절염 환자의 재활	2	금요일 12교시~13교시	김재민
	박사 필수	Mreh701	박사초독	1	목요일 12교시~12교시	김혜원
		Mreh702	소아재활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박주현
		Mreh703	노인재활	3	금요일 12교시~14교시	최은석
		Mreh705	전기진단학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이정수
		Mreh706	재활의학 특강 II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김준성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가 정 의 학	석사 필수	Mdms501	석사초독	1	목요일 01교시~01교시	송상욱
		Mdms506	임상영양의학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송찬희
		Mdms507	가정의학 특강 I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최창진
	선택	Mdms601	임종환자관리	2	월요일 11교시~12교시	김세홍
		Mdms608	비만학	2	월요일 13교시~14교시	염근상
	박사 필수	Mdms701	박사초독	1	금요일 01교시~01교시	옥선명
		Mdms707	가정의학 특강 II	3	금요일 12교시~14교시	정주혜
		Mdms708	일차의료와 주치의 제도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이재호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응 급 의 학	석사 필수	Memg501	석사초독	1	화요일 12교시~12교시	최경호
		Memg503	전문외상구조술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정시경
		Memg505	전문소아심장구조술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김한준
		Memg506	응급의학 특강 I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오주석
	박사 필수	Memg701	박사초독	1	월요일 12교시~12교시	김영민
		Memg703	뇌소생학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박규남
		Memg704	응급의료체계학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박규남
		Memg706	응급의학 특강 II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이운정
		Memg707	심정지증후군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오상훈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치과 학	석사 필수	Mden501	석사초독	1	금요일 02교시~02교시	김신영
		Mden503	구강외과학 개론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김지연
		Mden506	성장발육학	3	월요일 12교시~14교시	모성서
	선택	Mden607	심미치과학	2	목요일 12교시~13교시	한승훈
		Mden615	치아우식증의 병리 및 치료	2	화요일 12교시~13교시	양성은
	박사 필수	Mden701	박사초독	1	화요일 14교시~14교시	고영경
		Mden702	치과임프란트학	3	금요일 12교시~14교시	이수영
		Mden709	치과 영역에서의 줄기세포 연구	3	수요일 02교시~04교시	박준범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직업 환경 의 학	석사 필수	Moem501	직업환경의학 석사 논문 초독	1	월요일 12교시~12교시	김형렬
		Moem502	산업보건정책 및 관리	3	토요일 03교시~05교시	김형렬
		Moem503	환경보건 세미나	3	토요일 07교시~09교시	명준표
	선택	Moem602	직업성호흡기질환 역학과 사례연구	2	월요일 14교시~15교시	명준표
	박사 필수	Moem701	직업환경의학 박사 논문 초독	1	월요일 13교시~13교시	김형렬
		Moem704	사업장 보건관리 이론과 실무	3	금요일 12교시~14교시	김형렬
		Moem706	직업환경의학 특강 II	3	토요일 10교시~12교시	강모열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의 생 명 중 개 의 학	석사 필수	Mtbs502	기초의과학 I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김성주
		Mtbs506	중개의학-통계 I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김동재
	박사 필수	Mtbs701	박사초독	1	월요일 11교시~11교시	전흥재
		Mtbs702	기초의과학 II	3	목요일 12교시~14교시	김성주
		Mtbs706	중개의학-통계 II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김동재

▶ 의생명·건강과학과

1. 2020학년도 후기까지 이수학점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전공 + 선택	9	12	21
공통	6	6	12
생명의과학세미나	3	6	9
개별지도연구	6	10	14
세미나,초독	-	2	4
연구윤리	1	1	1
계	25	37	61

2. 2021학년도 전기 이후 입학생 이수학점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전공 + 선택	9	12	18
공통	6	6	9
생명의과학세미나	3	6	9
개별지도연구	6	10	14
세미나,초독	-	2	4
연구윤리	1	1	1
계	25	37	55

- ① 본인 전공 이수학점 석사는 3학점 이상, 박사는 6학점 이상, 통합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② 개설된 전공에서 타 전공을 수강할 경우 선택 학점으로 이수구분이 변경됨
- ③ 박사과정 특별전형 대학원생은 개별지도연구 8학점(4학기), 전공+선택 14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과(전공)책임교수 추천으로 최대 12학점까지 신청가능
- ④ 생명의과학세미나 강의는 합동강의로 진행함.
- ⑤ '핵심의과학실험' 강의 이수 시 졸업요건 중 컨버전스 핵심 실험교육 이수 충족(4번 확인.)

가. 의생명·건강과학과 졸업요건 중 충족요건 2가지

1) 박사(통합) 학위논문 청구자 공개발표 참관

- 대 상 : 의생명·건강과학과 학생 전원
- 참관시기 : 6월 초/ 12월 초 실시
- 참관횟수 : 석사 1회, 박사(통합) 2회
- ※ 공개발표 참관 보고서 미 제출시 논문청구 자격 미달

2) 「컨버전스 핵심 실험교육」 이수 또는 「핵심의과학실험」 교과목 1학점 이수

- 2020학년도 후기 입학생까지 4단계 BK21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컨버전스 핵심 실험교육」을 이수
- ※ 교육 이수요건

기준 입학년도	석사과정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2018년 2학기	2회	3회

- 2021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핵심의과학실험」 교과목 1학점 이수
의생명·건강과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수강신청 후 학점 취득(수강인원 제한 있음.)

나. 학점 이수 예시

▶ 석사과정

구 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전공 + 선택	3	6	-	-
공통	3	3	-	-
생명의과학세미나	3	-	-	-
개별지도연구	2	2	2	-
연구윤리	1	-	-	-
계	12	11	2	-

▶ 박사과정

구 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전공 + 선택	6	3	3	-	-	-
공통	3	3	-	-	-	-
생명의과학세미나	-	3	3	-	-	-
개별지도연구	2	2	2	2	2	-
세미나,초독	-	-	-	2	-	-
연구윤리	1	-	-	-	-	-
계	12	11	8	4	2	-

▶ 석·박통합과정

구 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8학기
전공 + 선택	3	3	3	3	3	-	-	-
공통	3	3	-	3	3	-	-	-
생명의과학세미나	3	-	-	3	-	3	-	-
개별지도연구	2	2	2	2	2	2	2	-
세미나,초독	-	-	-	-	-	2	2	-
연구윤리	1	-	-	-	-	-	-	-
계	12	8	5	11	8	7	4	-

학과	이수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의 생 명 · 건 강 과 학 과	개별지도	090032	개별지도연구	2	토요일 01교시~02교시	지도교수
	세미나	090037	생명의과학세미나	3	화요일 12교시~14교시	이성범
	일반선택	54232	휴먼 & AI	3	금요일 06교시~08교시	박소령
	공통필수	090033	Presentation English I	3	월요일 03교시~05교시	이진석
	공통필수	090044	의과학연구론 I	3	월요일 07교시~09교시	구효정
	공통필수	090047	의학통계학입문	3	수요일 07교시~09교시	김동재
	공통필수	090050	생명과 연구의 윤리	1	수요일 12교시~12교시	정재우
	공통필수	090053	핵심의과학실험	1	금요일 04교시~05교시	정승현
	공통필수	090054	창업과 사회	1	화요일 05교시~05교시	김호식
	초독,세미나	Bmed518	의과학 컨버전스 세미나	1	목요일 06교시~06교시	조미라
	초독,세미나	Bmed512	기초약리학 초독	1	월요일 12교시~12교시	김지윤
	초독,세미나	Bmed504	면역미생물학초독	1	금요일 06교시~06교시	서상욱
	초독,세미나	Bmed510	분자생명의학세미나	1	목요일 07교시~07교시	이숙경
	초독,세미나	Bmed511	분자생명의학초독	1	화요일 03교시~03교시	조영애
	초독,세미나	Bmed506	신경생물학초독	1	화요일 09교시~09교시	조경옥
	초독,세미나	Bmed517	의료정보학 초독	1	화요일 05교시~05교시	홍동완
	초독,세미나	Bmed508	의물리공학세미나	1	금요일 09교시~09교시	최보영
	초독,세미나	Bmed509	의물리공학초독	1	금요일 08교시~08교시	최보영
	초독,세미나	Bmed524	고급의물리공학 세미나	1	화요일 06교시~06교시	성원모
	초독,세미나	Bmed149	의학통계 논문 초독	1	화요일 06교시~06교시	김동재
	초독,세미나	Bmed507	중앙생물학초독	1	수요일 11교시~11교시	남석우

※ '휴먼&AI' 는 p.47을 참고하십시오.

학과	전공	과목 번호	교과목명	학 점	요일/교시	담당 교수
의 생 명 · 건 강 과 학 과	기초/임상 약리학	Bmed126	임상약리학	3	월요일 07교시~09교시	임동석
		Bmed211	기초약리학 I	3	월요일 04교시~06교시	조경옥
		Bmed213	신경약리학	3	월요일 10교시~12교시	조경옥
	면역·미생물학	Bmed103	기초면역생물학	3	화요일 03교시~05교시	김태규
		Bmed192	면역세포의 대사와 사멸	3	화요일 07교시~09교시	조미라
		Bmed210	급만성 바이러스 감염과 면역반응	3	월요일 08교시~10교시	성필수
		Bmed224	응용면역학	3	수요일 07교시~09교시	유승아
	분자세포생물학	Bmed114	분자생물학 I	3	화요일 07교시~09교시	임향숙
		Bmed162	유전체마커 임상연구	3	금요일 07교시~09교시	정연준
		Bmed209	약물 전달	3	월요일 11교시~13교시	구희범
		Bmed225	전사체분자생물학	3	월요일 05교시~07교시	김호식
	신경생물학	Bmed106	신경해부 및 조직학	3	월요일 08교시~10교시	김인범
		Bmed108	신경생리학	3	월요일 08교시~10교시	이덕주
	응용해부학	Bmed200	임상해부학	3	목요일 08교시~10교시	이우영
		Bmed208	법의해부학	3	화요일 08교시~10교시	김이석
		Bmed223	나이추정학	3	수요일 08교시~10교시	이상섭
	의료정보학	Bmed171	의료정보학개론	3	목요일 04교시~06교시	최인영
		Bmed173	의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3	화요일 09교시~11교시	홍동완
		Bmed175	유전체학개론	3	목요일 07교시~09교시	김태민
		Bmed178	원격의료와 모바일 헬스	3	화요일 07교시~09교시	김현성
		Bmed191	BIT융합 정밀의학 협동과정	3	금요일 04교시~06교시	정연준
	의물리공학	Bmed118	의물리학 개론	3	월요일 01교시~03교시	서태석
		Bmed150	고급의물리학	3	화요일 01교시~03교시	서태석
		Bmed152	자기공명영상학 프로젝트	3	화요일 07교시~09교시	최보영
		Bmed228	방사선 차폐	3	목요일 11교시~13교시	성원모
	의학통계학	Bmed136	통계학이론I	3	수요일 04교시~06교시	민은정
		Bmed139	생존분석	3	수요일 08교시~10교시	민은정
		Bmed146	반복측정자료의 분석	3	화요일 07교시~09교시	김동재
	종양생물학	Bmed226	노화와 종양	3	수요일 12교시~14교시	홍승진
		Bmed227	항암화학요법	3	화요일 09교시~11교시	구효정
	줄기세포·재생의학	Bmed102	줄기세포생물학	3	금요일 03교시~05교시	오일환
		Bmed206	줄기세포 응용연구	3	금요일 07교시~09교시	오일환
	통합의과학	Bmed166	중개의과학 개론	3	목요일 08교시~10교시	제갈동욱

3. 의생명·건강과학과 ‘휴먼 & AI’ 교과목 신청 안내

과목개요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이 기본으로 숙지해야 할 AI 관련 교과목
인간과 기술의 조화, 공학과 인문학의 접목

교과목 ‘휴먼 & AI’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서 주관하는 교과목으로 온라인교육으로 운영됩니다. 수강신청시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학점교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지도교수님 서명을 받아 수강신청 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휴먼&AI 교과목에 한해서 학과책임교수님 서명은 교학팀에서 일괄 받겠습니다.)

4. 의생명·건강과학과 융합교육과정 완료시 이수증 발급 안내

약물전달시스템 과정 필수 교과목		
학수번호	세부전공	과 목 명
Bmed209	분자세포생물학	약물 전달
Bmed211	기초/임상약리학	기초약리학 I
090044	의생명건강과학과 공통과목	의과학연구론 I
Bmed227	종양생물학	항암화학요법

상기 필수 교과목을 재학 학기 내에 수강 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융합교육과정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윤리학과

구분		박사과정	비 고
공통필수	생명윤리세미나 I, II, III	9	
	박사논문연구 I, II	4	
전공필수		12	
선택		12	
합계		37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생 명 윤 리 학	선택	Jmth604	논리와 비판적 사고	3	화요일 13교시~15교시	우환식
		Jmth620	생명윤리문헌연구 II	3	수요일 06교시~08교시	정재우
	박사 필수	Jmth704	생명윤리세미나 II	3	수요일 09교시~11교시	박은호
		Jmth705	철학적 인간학 연구	3	수요일 13교시~15교시	정현석
		Jmth712	박사논문연구 I	2	수요일 04교시~05교시	정재우

▶ 정밀의료빅데이터학과

구 분	의학	이학
전공(의학/이학)필수 및 선택	15	15
개별지도연구	6	6
세미나, 초독	2	2
생명윤리	1	1
계	24	24

※ 본인 학위종별(의학, 이학) 전공필수(공통 전공필수 포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

(단, 다른 학위종별의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경우 선택 학점으로 인정)

학과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교시	담당교수
정 밀 의 료 빅 데 이 터 학	석사필수	Pmbd101	디지털 헬스케어와 환자유래데이터	3	월요일 07교시~09교시	김현성
		Pmbd201	생명정보학개론	3	금요일 07교시~09교시	김태민
	선택	Pmbd302	의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3	수요일 09교시~11교시	홍동완
	초독, 세미나	Pmbd314	의료정보학 초독	1	수요일 05교시~05교시	홍동완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

1.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 ----- 50
2. 일반대학원 성의교정 학사시행세칙 ----- 68
3. 대학원 성의교정 장학금 지급 세칙 ----- 78
4. 일반대학원 성의교정 수료연구생에 관한 내규 ----- 81
5. 성의교정 대학원 특별전형 내규 ----- 83
6. 성의교정 대학원 전일제(full-time) 대학원생 관리 내규 ----- 85
7. 성의교정 대학원 외국인 학생의 입학에 관한 내규 ----- 87
8. 성의교정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시한 경과자 특례지침 ----- 89
9. 대학원과 특수대학원간의 학점교류 내규 ----- 90
10. 서강대학교와 대학원 학점교환 내규 ----- 91
11. 가톨릭대학교-서강대학교 대학원 학점교환제에 대한 도서관이용 내규 -- 92
12. 연구계획서 심사 규정 -----93
13.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위원회 규정 ----- 94
14. 수업료 및 입학금 반환 규정 ----- 98
15. 학점에 의한 등록금 감면 규정 ----- 100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정 2003. 09. 01.

개정 2022. 01.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일반대학원, 각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8조와 본교 교육이념에 따라 인간을 존중하는 전문인,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사회인, 인류사회 발전과 평화에 공헌하는 세계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개정 2007.9.1, 2009.3.1., 2012.5.3, 2014.11.22., 2021.7.30.>

1. 일반대학원

2. 특수대학원 : 보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의료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임상치과학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문화영성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 생명대학원, 교회법대학원,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의료경영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 <개정 2017.01.25, 2017.9.22>

3. 전문대학원 : 의학전문대학원

제3조(대학원의 과정) ① 대학원에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하며,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통합과정을 합하여 "각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9.3.1>

② 일반대학원에 2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부설할 수 있다.

제3조의2(계약학과) ① 대학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국가, 지방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학위명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3.1]

제4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①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9.1, 2009.3.1, 2013.10.8>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② 연구과정 또는 특별과정은 약간명을 선발할 수 있다.

제2장 입학

제5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지원자격)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통합과정, 연구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 포함)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 포함)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대학원 학과(전공)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요건 외에 추가로 자격요건을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④ 본교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휴직을 조건으로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7.22>

제7조(입학지원절차)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전형)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방법은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구술시험등으로 시행한다. 입학전형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1, 2006.9.1>

제9조(입학전공분야)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개설된 학과(전공)중 입학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공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편입학) ①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안에서 학과(전공)별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1회에 한하여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제적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재입학을 한 자에게는 제적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회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단, 전문대학원은 별도로 한다) <개정 2009.3.1>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3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의 정의)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하며,

재학연한이라 함은 각 학위과정의 허용된 수료기간을 말한다.

제14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2년, 박사학위과정 3년, 석박사 통합과정 4년. 단, 박사학위과정의 융복합의과학과 및 성심교정 소속학과 2년 <개정 2014.3.25., 2016.6.21., 2017.1.25., 2022.1.15.>
2.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2년 6개월(5학기). 단,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생명대학원 및 사회복지대학원 2년(4학기), 교회법대학원 3년(6학기), 교육대학원 2년(4학기) 이상 <개정 2014.11.22, 2017.1.25. 2017.9.22, 2017.11.22>
3. 전문대학원 : 별도로 정함

②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 호와 같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4.3.25., 2016.3.1., 2022.1.15.>

1. 성심교정 석박사 통합과정 1년 이내 <신설 2022.1.15.>
2. 성의교정 박사과정 6개월 이내 <신설 2022.1.15.>
3. 성심교정 경영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외국인대상) 1년 이내 <신설 2022.1.15.>

제15조(재학연한) ①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3.1., 2016.6.21., 2017.1.25.>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3년, 박사학위과정 5년, 통합과정 7년
2.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4년, 단, 교회법대학원은 4년 6개월
3. 전문대학원 : 별도로 정함

② 재학연한은 정해진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경우 각 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학연한을 1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등록·휴학·복학 및 제적

제16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휴학) ① 병역, 임신·출산, 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의 1/4이상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대학원장, 각 특수대학원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09.3.1., 2016.3.22>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휴학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병역, 임신·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학은 제3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2>

제18조(복학) 복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의 1/4이내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단, 전문대학원은 별도로 한다) <개정 2009.3.1>

제19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19조의2(전과) 전과는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과

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3.20.>

제5장 교과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제20조(교과과정)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21조(학기당 취득학점)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학업성적)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F	69 이하	0

제23조(유효성적과 수료성적) ① 학업성적이 C°이상인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각 대학원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성적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②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해서는 총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단, 전문대학원은 별도로 한다) <개정 2009.3.1>

제24조(수료인정 및 최소이수학점) ① 제14조에서 정한 각 학위과정의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다만, 통합과정에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신학과는 36학점, 보건대학원, 의료경영대학원, 임상치과학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보건의료경영대학원은 26학점, 교회음악대학원은 35학점, 교회법대학원은 88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9.3.1, 2011.10.18., 2013.10.8., 2016.6.21., 2017.1.25., 2018.4.28., 2021.7.30.>

③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중 인정된 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으로 한다.

④ 일반대학원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54학점으로 한다. 단, 성의교정 의생명·건강과학과의 경우 55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6.3.1., 2021.3.31.>

⑤ 전문대학원은 별도로 한다. <신설 2009.3.1>

제25조(학사학위과정과의 연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본교 학사학위과정 학생이 일반대학원 개설과목의 수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학점까지 수업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수강 대상 및 자격, 학점인정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하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석사 연계과정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8.1.1., 개정 2021.5.24.>

제26조(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대학원 학생이 본교 또는 국내·외의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시행세칙 및 '대학원과특수대학원간의학점교류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에

서 정한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제14조에서 정한 수업년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③ 군위탁생의 경우 학·군제휴 대학 및 군내 교육기관간 학점교류를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6.3.1>

④ 전문대학원은 별도로 한다. <신설 2009.3.1>

제6장 논문 및 학위수여

제27조(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각 대학원 특성에 따라 다른 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학위논문 심사) ① 학위논문 심사는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 심사위원(석사학위과정은 3인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인 이상)이 행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전문대학원은 별도로 한다. <신설 2009.3.1>

제29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서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단,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논문 제출에 상응하는 대체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전문대학원의 학위수여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3.1., 2022.1.15.>

② 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자로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의 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③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의2(복수학위 및 공동학위의 수여) 본교는 타 대학교(외국대학 포함)와의 협약에 의하여 복수학위(Dual Degree) 또는 공동학위(Joint Degree)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1.>

제30조(명예박사학위) ①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별표 1의 박사학위 종별에 따른다.

제3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2조(학위 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1.>

제7장 연구과정

제33조(설치목적) 대학원에 특수한 과목 또는 과제의 수업에 출석하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학위과정의 연구과정을 부설할 수 있다.

제34조(입학) ①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연구과정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게는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입학전형방법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35조(수업년한) 연구과정의 수업년한은 1년 이내로 한다.

제36조(수료) ① 연구과정 수료자에게는 그 연구 과목 또는 과제에 대하여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 입학시 인정되지 않는다.

제8장 공개강좌

제37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에 교양,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연구상의 학식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제목 또는 강좌명, 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총장이 결정하여 발표한다.

③ 공개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38조(학생지도) 대학원 학생은 본 학칙을 준수하고 소속 대학원장, 교학부장,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 교수(전공책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장학금(또는 연구비)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에서 따로 정한다.

③ 군위탁생의 경우 등록금의 50%(입학금 제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3.1>

제40조(징계) ① 대학원 학생이 본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절차 및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41조(조직) ① 일반대학원에는 대학원장, 성심대학원장 및 교정별 교학부장을 둔다. <개정 2017.9.22>

② 각 특수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교학부장을 둔다.

③ 전문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신설 2009.3.1>

④ 대학원에는 학과(전공)마다 주임교수(책임교수)와 학과장을 둘 수 있으며, 학생별로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20>

⑤ 대학원에는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⑥ 대학원 직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2조(대학원위원회 및 전문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 본교에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전문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1>

②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전문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3.1>

제43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4조(각 대학원 운영위원회)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대학원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45조(준용규정) 수업일수, 휴업일등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46조(시행세칙의 제정) 본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본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구 대학원학칙, 산업보건대학원학칙, 사회복지대학원학칙, 심리상담대학원학칙, 의료경영대학원학칙, 교육대학원학칙, 행정대학원학칙, 임상치과대학원학칙, 임상간호대학원학칙, 문화영성대학원학칙, 경영대학원학칙, 교회음악대학원학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학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 학칙이 폐지됨에 따라 본 학칙의 시행 당시의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3조제3항, 제37조, 별표1, 별표2)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일반대학원 입학정원의 총정원제(별표1)는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조, 제14조, 제24조②, 별표1, 별표2)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전공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산업보건대학원 각 전공의 재적생은 전공명칭이 변경되더라도 개정전 본 학칙에 규정된 전공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②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행정대학원 국제학과 재적생은 전과하지 않는 한 학위수여때까지

동 학과 소속을 유지한다.

③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문화영성대학원 각 전공의 재적생은 학과체제로의 변경에 따라 문화영성학과로 그 소속을 변경한다.

④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임상치과대학원 심미수복치과학과와 의재적생은 학과 명칭변경에 따라 치과보철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⑤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임상간호대학원 감염간호전공의 재적생은 전공 명칭변경에 따라 감염관리간호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학칙(제4조 별표1, 별표2)은 2005년 9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6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는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 2항은 2006년 3월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학과,전공 신설 및 폐지에 따른 조치) ①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의학과 의학세포생물학, 생명의과학, 면역·미생물학, 신경생물학, 중앙생물학 전공의 재적생과 의과학협동과정 재적생은 생명의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② 2005학년도 이전에 의학과 의학세포생물학, 생명의과학 전공을 수료한 학생과 의과학협동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수료당시의 학적을 유지한다.

③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IT전공) 학위는 2004학년도후기 졸업자부터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제4조 별표2)은 2005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보건대학원 역학및보건통계학 전공의 재적생은 전공 명칭변경에 따라 역학및임상시험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상담심리대학원 영성심리상담학과 재적생은 전공 명칭변경에 따라 영성상담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제4조 별표1, 별표2)은 2005년 10월10일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제8조, 제26조, 제39조)은 200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학칙(제4조, 제8조, 별표1, 별표2)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7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의 문화영성대학원 학위종별은 2005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학칙(제2조, 제4조 별표1, 별표2, 제14조1항2호)은 2007년 9월1일부터 시행하
되, 2008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는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의 문화영성대학원 문화영성학과 세부전공은 2007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2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학칙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
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영대학원의 수업년한 변경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학칙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
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의 문화영성대학원 문화영성학과 세부전공은 2011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 명칭 변경 및 폐지에 따른 조치) ①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임상치과학대학원 치과보

철학과의 재적생은 학과 명칭 변경에 따라 보존보철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교육대학원의 중국어교육전공, 영양교육 전공, 교육공학 전공 재적생은 전공이 폐지되더라도 개정전 본 학칙에 명시된 전공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4조 1항 1호 및 별표 1)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폐지에 따른 조치)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의학통계학과 재적생은 개정전 본 학칙에 규정된 학과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제6조 제4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4조 제1항 제2호, 별표 2)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4조, 제24조)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 2)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문화영성대학원 입학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학 당시의 전공명 및 학위명을 표기한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4조, 별표 1)은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제14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별표 1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4조의 개정 학칙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생명과학과 재적생은 학과명칭 변경에 따라 2014년 3월 1일부터 의생명·건강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 학칙(별표 1, 별표 2)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의료정보학전공 재적생은 변경 전 학칙에 명시된 전공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 학칙(제2조, 제14조, 별표2, 별표4)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14조 교육대학원 수업연한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특수대학원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특수대학원 통합에 따른 개정 학칙은 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한류대학원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 별도의 심의를 거쳐 글로벌융합대학원 내의 학과(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2.27.>

제3조(수업연한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본 학칙 제14조에 의하여 글로벌융합대학원 수업연한이 2년(4학기)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 학칙 변경 당시 행정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 시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신설 2014.12.27.>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 4)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4조, 제24조, 제32조, 별표 1, 별표 4)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4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7조)은 201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9조1)은 201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4조, 제15조, 제24조, 별표1)은 201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1, 별표2)은 201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의료정책학전공 및 의료경영정보학전공 재적생은 변경
전
학칙에 명시된 전공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 별표1, 별표2)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 3)은 201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학전문대학원 폐지를 위한 경과조치) ① 의학전문대학원은 201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재적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를 폐지한다.
② 구 학칙 시행 당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과·전공 및 학위종
별
을 별표 3과 같이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1조, 별표 4)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4조, 별표2는 2018년 3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글로벌융합대학원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① 글로벌융합대학원 분리에 따른 개정 학칙은 2018
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글로벌융합대학원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 별도의 심의를 거쳐 경영학과는 경영대학원,
행정학과는 행정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4조, 별표 1, 별표 2)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교육학박사 신설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제14조의 사회복지대학원 수업연한 및 별표 2의 사회
복지대학원 설치학과·전공 및 학위종별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폐지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되는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복지학과, 장애인복지학
과 재적생은 졸업까지 해당 학과 학적을 유지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전과를 허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2)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4조, 별표1, 별표2)은 201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
기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1, 별표2의 2019학년도 입학정원 조정은 2019학년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2)은 2018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2)은 2019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1, 별표2)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보건대학원 인간공학 및 재활보건
학전공의 재적생은 전공 명칭 변경에 따라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9조의2, 제41조)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2)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1, 별표2)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1>)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4조, [별표1])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제24조 제4항은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별표1]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5조)은 202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 중 별표1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 제24조, 별표2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공연예술문화학과 학위종별 명칭 변경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특수대학원 통합에 따른 개정 학칙은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202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보건대학원, 의료경영대학원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 별도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내의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별표1])은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4조, 제29조, [별표1], [별표2])는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12.5.3., 2012.11.28., 2014.3.1., 2015.3.1., 2014.11.22., 2016.10.7., 2017.1.25., 2017.9.22., 2017.11.22., 2018.1.8., 2018.4.28., 2018.12.9., 2019.1.13., 2020.3.1., 2020.5.12., 2021.7.30., 2022.1.15.>

2022학년도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전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보건대학원	산업 및 환경보건학전공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학전공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전공 건강증진학전공 보건정보학전공 역학 및 임상시험학전공 보건정책 및 관리학전공 국제보건학전공	보건학석사(산업 및 환경보건학) 보건학석사(물리치료 및 작업치료학) 보건학석사(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 보건학석사(건강증진학) 보건학석사(보건정보학) 보건학석사(역학 및 임상시험학) 보건학석사(보건정책 및 관리학) 보건학석사(국제보건학)	0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정신건강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의료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노인복지) 사회복지학석사(정신건강복지)	80
상담심리대학원	상담학과 영성상담학과 아동상담학과 조직상담학과	상담심리학석사(상담) 상담심리학석사(영성상담) 상담심리학석사(아동상담) 상담심리학석사(조직상담)	90
의료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전공	경영학석사(의료경영)	0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독서교육전공 상담교육전공 직업특수교육전공 한국어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 진로진학상담전공	교육학석사(특수교육) 교육학석사(유아교육) 교육학석사(독서교육) 교육학석사(상담교육) 교육학석사(직업특수교육) 교육학석사(한국어교육) 교육학석사(평생교육) 교육학석사(진로진학상담)	102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산업 및 환경보건전공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전공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전공 건강증진전공 보건정보전공 역학 및 임상시험전공 보건정책전공 국제보건 및 통일보건의료전공 의료경영전공 의료기술경영전공	보건학석사(산업 및 환경보건) 보건학석사(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보건학석사(산업 및 지역사회간호) 보건학석사(건강증진) 보건학석사(보건정보) 보건학석사(역학 및 임상시험) 보건학석사(보건정책) 보건학석사(국제보건 및 통일보건의료) 경영학석사(의료경영) 경영학석사(의료기술경영)	105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특별과정)
	학과 · 전공	학위종별	입학 정원	
임상치과학 대학원	보존보철학과 치과임프란트학과 치과교정학과 구강악안면외과학과	치의학석사(보존보철학) 치의학석사(치과임프란트학) 치의학석사(치과교정학) 치의학석사(구강악안면외과학)	20	
임상간호 대학원	가정간호전공 노인간호전공 응급간호전공 정신간호전공 종양간호전공 감염관리간호전공 호스피스간호전공	간호학석사(가정간호) 간호학석사(노인간호) 간호학석사(응급간호) 간호학석사(정신간호) 간호학석사(종양간호) 간호학석사(감염관리간호) 간호학석사(호스피스간호)	45	
문화영성 대학원	문화영성학과 문화영성전공 사목영성전공	문화영성학석사(문화영성)	20	
교회음악 대학원	교회음악과 오르간전공 작곡전공 합창지휘전공	교회음악석사(오르간) 교회음악석사(작곡) 교회음악석사(합창지휘)	15	
생명 대학원	생명윤리학전공 생명문화학전공 임상연구윤리학전공	생명윤리학석사(생명윤리) 생명문화학석사(생명문화) 생명윤리학석사(임상연구윤리)	25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경영학석사(경영학)	10	최고경영자과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 및 지방자치전공 의료 및 보건행정전공 탐정학전공	행정학석사(행정학)	38	
교회법 대학원	교회법학과	교회법석사	12	
계	14개 대학원		562	

[별표 3] <개정 2017.5.13.>

의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 과	학위종별	학 과	학위종별
의학전문 대학원	의학과	의무석사	의학과(통합)	의과학박사
총계	1개 대학원			

※ 「(통합)」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두고 있는 학과임.

[별표 4] <신설 2011.3.1, 개정 2011.12.6, 2015.11.10, 2016.3.1, 삭제 2017.9.22>

일반대학원 성의교정 학사시행세칙

제정 2003. 09. 01.

개정 2021. 09.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일반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각 학위과정의 학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제2조(입학지원서류)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 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을 인정하는 서류
3.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4.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
5. 경력증명서(해당자)
6. 주민등록초본
7. 기타 각 학과별로 요구하는 서류

〈박사과정〉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석사학위수여(예정) 증명서
3. 석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4. 대학 졸업증명서
5.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6.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
7. 경력증명서(해당자)
8. 주민등록초본
9. 기타 각 학과별로 요구하는 서류

제3조(입학전형방법) ① 서류심사, 구술시험, 필기시험 등 전형별, 학과별 특성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전공시험과 외국어시험으로 한다.

1. 전공시험 : 전공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을 평가한다.
2. 외국어시험 : 영어 혹은 학과에 따라 기타 외국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의생명·건강과학과의 전일제 석사과정 재학생 중 연구능력을 인정받은 학생은 석·박사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하여 입학할 수 있다. 단, 해당학기 박사과정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신설 2013.6.5, 개정 2014.3.25]

제4 조(입학전공분야) ① 각 과정의 전공분야는 원칙적으로 각 학사 및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 분야

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② 각 학위과정의 전공별 특성에 따라 타 전공분야라 할지라도 지원 전공분야를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입학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입학자는 전공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충과목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출제방식) ① 전공과목은 각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주관 하에 전공별로 출제방향 및 출제교수 등을 결정한 후 소정용지에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한다. 단, 전일제(full-time)학생에 대하여는 지도교수가 소정용지에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한다. [개정 2014.5.14., 2021.3.3.]

② 외국어과목은 일반 또는 전공분야에서 학문연구에 필요한 외국어의 독해력을 시험한다.

③ 구술시험은 학과별로 실시하되, 해당학과의 전공담당 교수가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능력, 적성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입시사정) ①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열어 입시사정회를 갖는다.

② 사정 결과는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통합)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합격자 발표) 입시사정 후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통지서를 발급한다.

제8조(편입학)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매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당해학기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한 학생의 퇴학 및 제적 이전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④ 재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퇴학 및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한다.

⑤ 재입학한 학생의 휴학은 퇴학 및 제적 이전의 잔여횟수에 한한다.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제10조(등록) ①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② 정규등록은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 이수를 완료할 때까지 해야 하는 등록을 말하며, 연구등록은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 이수를 완료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등록을 말한다.

③ 학생은 학위논문 제출시까지 석사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6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학기중 군입대로 휴학할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할 수 있다.

⑤ 연구등록의 경우 논문제출시한 미 경과자는 학위취득시까지 매년 신청하여야 하며, 논문제출시한 경과자는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9.3.1]

제11조(휴학 및 복학) ① 휴학기간은 1회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기간 및 회수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입대,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1.]

③ 군제대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전역증명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④ 육아 휴학은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6.9.1.]

제4장 교과과정 및 수업

제12조(교과목 설정) 학과에서 제출한 교과목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되며, 설정된 교과목은 3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교과목 개설) ① 학과(전공) 책임교수는 편성된 교과과정에서 다음 학기의 개설과목을 선정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3.>

② 각 학과에서 한 학기에 개설할 수 있는 과목수는 석사과정은 6 과목,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에서는 9 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을 초과하여 개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유사학과의 유사과목은 공동 개설할 수 있다.

제14조(교과목 담당교수)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교과목 담당교수”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각종 학술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4. 기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15조(담당과목의 제한) ① 교수 1인당 학기별 담당과목 수는 석사과정 1과목, 박사과정 1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요청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3.3.>

② 타 학과 담당교과목은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3.>

제16조(강의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담당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대학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수강할 학생들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개강과 동시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17조(이수학점 및 유효성적) ① 학생은 매학기 9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단, 학과(전공)책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3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전형, 의생명·건강과학과 학생은 12학점까지, 간호학과 석사과정 학생은 10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3.>

② 석사과정 학생이 박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허용학기는 제3학기부터이다.

③ 교과목별 이수성적은 B⁰ (80)으로 하되,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해서는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수업일수 및 학기인정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한 학기중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F학점으로 처리한다.

제19조(보충과목) ① 석사,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과에서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사학위 과정의 전공을 변경하여 입학한 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후 입학한 자로서 학과 교수회의에서 보충과목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료학점 이외에 석사과정 수료학점을 보충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2. 동일계 전공으로 인정받아 입학한 자
- ③ 보충과목의 이수는 학점은 부여하되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④ 입학전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소속 학과에서 보충과목으로 이수 인정을 받은 교과목은 면제

될 수 있다.

⑤ 보충과목은 각 과정 입학 후 최초 3학기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20조(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 변경은 개강 후 1주가 경과한 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제21조(학점인정) ①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타학과 입학자의 석,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3.>

② 협정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 및 학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학점 교환 내규에 따른다.

③ 본교 특수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과 학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학점 교환 내규에 따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 내지 제3항을 통해 취득한 총 학점은 석사학위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각각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에서는 24학점까지 인정한다. 단,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요청에 의해 대학원장이 승인하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3.>

제22조(학점 이중 취득) 동일한 교과목에 대하여 이중 취득한 학점은 먼저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제23조(학기중 군입대 휴학자) 수업일수 2/3를 경과한 자가 군입대할 경우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소정의 평가를 한 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성적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학기의 교과목 성적을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성적 정정) 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에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등록기간 이전까지 해당교수는 시험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전공변경) ① 전공의 변경은 동일 학과 내에 한하며, 공통된 과목의 학점을 인정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각 과정별 수업연한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9.1.>

1. 전공변경신청서

2. 학업성적표

제5장 논문제출 자격시험

제27조(논문제출 자격시험) ①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②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한다.[개정 2013.6.5]

제28조[삭제 2013.6.5]

제29조[삭제 2013.6.5]

제30조[삭제 2013.6.5]

제31조[삭제 2013.6.5]

제32조(실시시기) 종합시험은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실시하며, 종합시험 실시시기는 학과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적용대상) 종합시험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1.27.>

1. 의학과 1993년 3월 이전 입학자

2. 제42조 2항 해당자

3. 의학과 특차입학자와 의과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입학자

4. 생명윤리학 협동과정

제34조(시행방법) ① 제33조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는 심사위원을 정하여 공개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삭제 2019.11.27.>

③ 생명윤리학 협동과정은 2019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5학기 이상 등록하고 28학점 이상 취득한 후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으로 학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11.27.>

제35조(시험수준) 종합시험은 학생이 학위청구 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전공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제36조(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학과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6장 학위논문

제1절 논문지도교수

제37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입학 시 정해진 지도교수로 위촉한다(이하 “지도교수” 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타 학과(전공) 교수 또는 겸임교수 중에서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으며,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은 제38조에 준한다.

제38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1.9.1.>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최근 4년간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SCIE 또는 SSCI 학술지에 논문을 3편 이상 발표했거나 혹은 4년간 발표한 논문의 IF 합계가 12 이상인 자이면서, 대학원장이 위촉한 자. 단, 인문학의 경우 연구업적은 국내외 3편 이상 발표한 자로 한다.

2. 정년 퇴임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39조(논문 지도교수의 변경) 논문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와 학과(전공) 책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3.>

②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지도교수의 퇴직·휴직·징계 및 조사,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학생지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학생이 지도교수의 변경을 원하지만 지도교수가 불허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 사유서”를 소속학과(전공) 책임교수와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고,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의 지도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 변경 후에는 석사 1개 학기 이상, 박사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동일전공 교수가 논문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2절 논문작성 및 제출

제40조(제출자격) 각 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9.1.>

1. 각 과정의 수료학점을 취득(취득 예정자 포함)하고 그 성적의 평균 평점이 3.0(80점) 이상인 자
2.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
4. 의학과 박사과정 특차입학자,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자 또는 박사과정 전일제 입학자로서 재학 중 SCI(SCIE포함)에 등재된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로 연구논문을 발표한 자[개정 2006.3.1, 2019.3.1]
5. 의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자 또는 석사과정 전일제 입학자로서 재학 중 국내 전문학회지 또는 국제 학술지에 제1저자로 연구논문을 발표한 자[개정 2006.3.1]
6. 의생명·건강과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전일제 입학자로서 재학 중 SCI(SCIE 포함)에 등재된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로 연구논문을 2편 이상 발표한 자[개정 2006.3.1, 개정 2014.3.25]
7. 전일제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8. 전문학술지 게재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게재승인이 미완료 상태인 경우에는 ‘게재증빙 미제출 사유서(지도교수 서명 포함)’를 제출하면 논문심사 자격을 사전 부여하고 제출유보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제출을 허락한다. 학위 재청구시에는 전학기의 논문심사결과를 인정하되 게재논문과 심사논문이 동일해야 한다.

제41조(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 각 과정 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체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제출시한) ① 석사학위 논문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6년내에, 박사 학위논문은 10년내에, 석·박사통합과정 학위 논문은 12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병역, 해외연수 등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논문제출시한을 경과하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학과(전공) 책임교수 경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논문제출시한 경과자 특례지침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9.3.1., 2021.3.3.]

제3절 논문심사

제43조(논문심사)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한다.

제44조(예비심사) ① 제출된 논문원고는 심사위원에게 예비심사를 의뢰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게 논문 이외에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자는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에 전반적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본심사 보류를 지시할 수 있다.

④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예비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본심사) ① 본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해당 논문이 학위논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정한다.

②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46조(논문심사위원)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석사과정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 박사과정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5명으로 하며, 각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이 된다.

② 각 과정의 학위논문 심사위원 자격은 조교수 이상 또는 논문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원장이 위촉한 자 이어야 한다. 단, 박사과정의 경우 외부교수를 심사위원으로 1인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부교수는 정규 4년제 대학 조교수(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9.3.1., 2021.9.1.]

③ 학위논문 예비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단, 심사위원 신상의 사유로 교체가 부득이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논문의 판정) ①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심사 결과 평균평점이 3.0(80점)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② 박사학위논문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공개발표)의 결과에 있어 각각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과 평균평점 3.0(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48조(본심사 결과보고) 본심사가 끝나면 주심은 지체없이 본심사의 결과보고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학위논문의 공표) 합격된 박사학위논문은 학위수여 후 1년 이내에 학술지 등에 공표하고 그 별책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제7장 학위수여

제50조(학위수여 자격) ① 학위수여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이 3.0(80점) 이상인 자
3.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② 석·박사 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06.3.1, 개정 2010.10.15]

1. 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한 자

제51조(의결 및 승인) 박사학위는 일반대학원운영위원회(통합)의 의결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제52조(학위기)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학위기는 별표 I 과 같다.

제8장 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제1절 연구생

제53조(전형방법)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치며, 최종선발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4조(지원서류) 소정의 지원서와 연구계획서 및 최종 학력증명서로 한다.

제55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① 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생은 매학기 9학점 이내에서 매학기 개설 교과목을 청강해야 한다.

제2절 외국인 학생

제56조(선발절차) ① 대학원학칙 제4조에 의한 정원의 입학자의 전형은 대학원학칙 제8조에 근거하여 특별전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전공분야의 성격상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과의 지원자에게는 별도의 한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외국인 학생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7조(한국어 시험) ① 한국어 시험은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 ② 시험의 수준은 대학원의 학업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실력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각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 ④ 국내의 공인 한국어 훈련기관의 수료증 소지자에게는 한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장 대학원운영위원회

- 제58조(대학원운영위원회) 대학원학칙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성의교정 학사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학원운영위원회(성의)(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며, 위원은 교학부장의 제청에 의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대학원 각 학과(전공) 책임교수를 포함하는 확대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3.3.>
- 제60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대학원학칙 제43조의 기능 중 성의교정에 국한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일반대학원운영위원회(통합)의 인준을 받는다.
- ② 확대 운영위원회는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학과의 의견 수렴 및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 제61조(소집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 제62조(소위원회) ① 대학원장은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필요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다.
 - ③ 소위원회의 명칭, 구성, 기능,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① 이 시행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 시행세칙(제40조, 제56조)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시행세칙 제정에 따라 기존 관련 제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 ② 이 시행세칙 제정 이전의 입학자 중 사안에 따라 입학당시의 시행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입학당시 시행세칙 적용여부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④ 논문제출 시한 연장 적용은 2003학년도 9월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7조제2항)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40조, 제50조)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의과학협동과정 수료자에게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개정 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27조)은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제27조는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조, 제40조)은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 제11조, 제49조)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1조)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0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6조)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제33조, 제34조) 201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 (제5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39조, 제42조, 제59조)은 2021년 3월 3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38조, 제40조) 은 2021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6조, 제46조) 는 2021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대학원 성의교정 장학금 지급 세칙

제정 2000. 03. 01.

개정 2021. 03. 03.

제1조(목적) 본 세칙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성의장학회 규정 제3조 2항 및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 성의교정 대학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성의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학생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성의교정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한 업무에 적용하며,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세칙에 의한다. <개정 2012.12.1>

제2조의2(사무관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그에 관련된 업무는 대학원장이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2.12.1]

제3조 (수혜대상)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성의교정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9.1>

1. 성의교정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무급 연구원
2. 가톨릭중앙의료원 및 성의교정, 직할병원에 재직 중인 성직자 또는 수도자
3. 가톨릭중앙의료원 및 산하 기관 근무 전공의 및 임상강사 이상 교원(전임교원 제외)
4. 박사과정 특별 전형자
5. 융복합의과학과 전형자
6.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12.12.1]

제3조의2(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금액은 <별표1>과 같다.

[본조신설 2012.12.1]

제4조 삭제 <2012.12.1>

제5조(수혜기간) 장학금 수혜기간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2.1>

제6조(장학위원회) ① 장학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2.1>

② 장학위원회는 대학원 운영위원회(성의)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12.1>

제7조 삭제 <2012.12.1>

제8조(자격상실)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소정의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 (보칙) ① 본 세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1>

② 본 세칙을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세칙의 제정에 따라 기존의 성의장학금지급규정은 폐지하고 본 세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 세칙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개정 세칙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 별표 1)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별표 1)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별표1)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별표1) 2019년 11월 27일부로 시행하되,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별표1>은 2021년 3월 3일 부로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2.12.1, 개정 2013.9.1., 2014.5.14., 2017.8.25., 2019.11.27., 2021.3.3.>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금액

장학금명	대상	지급금액
성의장학금	학과(전공)책임교수 및 지도교수 추천	소정의 장학금
	의료원 및 산하기관 근무 전공의 및 임상강사 이상 교원(전임교원 제외)	소정의 장학금
	전일제 무급 연구원	수업료 반액 감면
복지장학금	전일제 무급 연구원 중 저소득층 학생	수업료 반액 감면
기초학교실 재직 MD 장학금	본교 의과대학 졸업생 중 기초의학교실 재직 타교 의과대학 졸업생 중 기초의학교실 재직	등록금 전액 감면
외국인장학금	정원 10% 이내	전일제 - 수업료 전액 지급 비전일제 - 수업료 반액 지급
수도자장학금	의료원 및 직할기관 재직 중인 성직자 또는 수도자	등록금 전액 감면
특별전형장학금	의생명·건강과학과 및 기타 학과 박사과정 입학·재학생	의생명·건강과학과 - 등록금 전액 지급 의생명·건강과학과 외 - 수업료 반액 지급
특별장학금	우리 대학 유관기관 보직자 중 학과(전공) 책임교수가 추천하여 장학위원회 심의	소정의 장학금
융복합 의과학과 특별전형 장학금	융복합의과학과 입학·재학생	등록금 전액 감면
연구소장학금	연구소장의 추천	소정의 장학금
교실장학금	교실 주임교수 추천	소정의 장학금
동문장학금	동문회장의 추천	소정의 장학금
융합형 의사과학자 장학금	융합형 의사과학자 선정 학생	소정의 장학금
추강문화 장학금	추강문화재단 추천 학생	소정의 장학금
서송재단 장학금	서송재단 추천 학생	소정의 장학금
생명위원회 장학금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추천 학생	소정의 장학금

일반대학원 성의교정 수료연구생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4장 및 제5장, 일반대학원 성의교정 학사시행세칙 제3장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성의교정 수료연구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매학기 소정의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을 “수료연구생”이라 한다.

②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수료연구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을 “수료생”이라 한다.

제3조(등록 및 미등록) ① 수료연구생은 논문제출시한(석사과정은 입학일로부터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박사통합과정은 12년)까지 매학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② 미등록한 경우에는 제6조의 수료연구생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③ 수료생이 수료연구생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연구등록금 [별표1]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휴학 및 복학) ① 잔여 휴학기간이 있는 수료연구생이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정규과정을 통산하여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회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해야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1년)에 한해 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복학하려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이전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를 수강하여야 한다.

제5조(자퇴 및 등록금 환불) 수료연구등록 후 본인이 자퇴원을 제출할 경우 제적처리되며, 이 경우 등록금 환불 규정에 의하여 연구등록금은 환불된다.

제6조(수료연구생의 권리) ① 지도교수의 연구논문지도를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학생에 준하여 연구를 위한 시설(도서관 및 실험실습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수료연구생에게는 학생증 및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수료연구생에게는 수료연구경력을 인정하여 수료연구경력증명서[별지서식1]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상기 이외의 사항은 수료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수료연구생의 학위논문 제출) ① 수료연구생은 논문제출시한(석사과정은 입학일로부터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박사통합과정은 12년)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논문심사비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대학원 학칙 제29조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제8조(학칙 및 내규의 적용) 복학, 제적, 지도교수의 변경 등 기타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성의교정 학사시행세칙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내규는 시행일 이후에 수료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일반대학원 성의교정 수료연구생 연구등록금

구 분	등록금
수료연구생	정규등록금의 2% (학기별, 백원단위 절사)

성의교정 대학원 특별전형 내규

제정 2011. 3. 1.

개정 2021.3.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2장(입학)에 의거 성의교정 대학원 특별전형에 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및 선발) ① 특별전형 과정은 대학원 박사과정에만 둔다.

② 특별전형 과정의 선발은 의생명·건강과학과와 기타 학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특별전형에 대한 지원 자격과 선발 요건은 일반전형에 준하되,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의생명·건강과학과는 전일제 학생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원) 특별전형을 통한 선발 정원은 성의교정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신청) 특별전형에 불합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원서 제출이나 추가 전형료 납부 없이 일반전형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5조(전형방법) 특별전형은 필기시험,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해 선발한다.

제6조(제출서류) 특별전형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 서식) 1부
2.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4.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표(TEPS, TOEFL, TOEIC) 1부(해당자에 한함)
5. 연구실적
6. 추천서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
8. 현역군인은 소속 기관장의 취학승인서 1부
9. 지도교수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1부

제7조(특전)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대학원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전을 부여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의생명·건강과학과
 - 가.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나. 연 1회의 해외학회 참가보조비를 지급한다.
 - 다. <삭제 2018.8.1.>
2. 기타 학과

가. 수업연한 동안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나. <삭제 2018.8.1.>

제8조(의무) ①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대학원생은 졸업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의생명·건강과학과 : IF의 합이 5.0 이상인 논문 발표

2. 기타 학과 : IF의 합이 2.0 이상인 논문 발표(단, 의학과: IF의 합이 3.0 이상인 논문 발표)

② 수업연한 동안 졸업에 필요한 논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대학원생에게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며, 유예기간 후에도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학 후 45년이 되는 학기부터 2년 간 해당 지도교수의 특별전형 입학생 지도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특별전형 입학생은 박사과정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수혜 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서약서를 입학 시 제출하도록 한다.

제9조(준용규정) 기타 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 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7조, 제8조 1호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8조 2항은 2011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는 2021년 3월 3일 부로 시행한다.

성의교정 대학원 전일제(full-time) 대학원생 관리 내규

제정 2004.10.13

개정 2017. 9. 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의교정에서의 대학원 지도교수의 연구보조, 학생의 연구수련 및 장학금 목적으로 운영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자격) 전일제 대학원생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성의교정 대학원 학생으로서 정규 등록한 자에 한한다.

제3조(신청)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 신청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학금 지급) ① 전일제 대학원생에게는 재학년간 동안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 지급액은 성의교정 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의무) ① 전일제 대학원생은 지도교수가 부과하는 연구업무를 보조한다.

② 전일제 대학원생은 대학에서 수강 및 연구보조 등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학위논문 제출) ① 석사과정 전일제 대학원생은 입학 후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제1저자(저자 중에 지도교수 포함)로 논문을 1편 이상 발표하거나, 게재가 확정(accepted paper)되어야만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지도교수가 교신저자(CA)일 경우 해당 논문을 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박사과정 전일제 대학원생은 입학 후 SCI(SCIE 포함)에 등재된 학술지에 제1저자(저자 중에 지도교수 포함)로서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게재가 확정(accepted paper)되어야만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지도교수가 교신저자(CA)일 경우 해당 논문을 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생명·건강과학과 석·박통합과정 전일제 대학원생은 입학 후 SCI(SCIE 포함)에 등재된 학술지에 제1저자(저자 중에 지도교수 포함)로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게재가 확정(accepted paper)되어야만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지도교수가 교신저자(CA)일 경우 해당 논문을 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삭제 2017.9.1>

⑤ 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 학위제출자격 논문은 변경된 지도교수가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며, 학위 청구논문도 변경된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일 경우에만 해당 논문을 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자격상실)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도교수 또는

근무기관장의 요청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4. 10. 13 제정)

제2조(경과조치) 2004학년도 전기에 입학한 전일제 대학원생은 이 내규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3항은 2006학년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는 2014년 2월 1일부터, 제6조 제3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6조 제4항)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의교정 대학원 외국인 학생의 입학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사시행세칙 제56조 3항에 의거 외국인 학생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외국인” 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전 교육과정(16년)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3조(지원자격) 대학원 각 학위과정 입학전형에 대한 외국인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 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박사 학위과정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제4조(모집학과) 모집학과는 각 학위과정 전 학과로 한다.

제5조(모집시기) 학생의 모집시기는 대학원 입학 전형 일정에 준한다.

제6조(전형방법)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 단, 외국에 거주하거나 입국사증 관계로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심사로 특별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제출서류)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입학지원서(소정서식) 1부
2. 출신대학교 교수 및 가톨릭대학교 지도교수 추천서 각 1부
3. 대학졸업(예정)증명서(원본 또는 공증) 각 2부
(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석사학위수여증명서 2부 추가)
※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은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추가
4.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원본 또는 공증) 2부
(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2부 추가)
5. 본인 및 보호자(부, 모) 외국인 증명서 각 1부
6.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7. 재정증명서 (10,000 \$ 이상 은행 예치) 원본, 호구부 및 거민신분증 사본 각 1부
8. 본인 여권사본 1부
9. 학력조회 동의서 1부
10. 사진 2매

제8조(학칙 및 내규의 적용) 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성의교정 학사시행세칙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의교정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시한 경과자 특례 지침

1. 목적

대학원 과정(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논문제출 시한 경과자에 대하여 시행 세칙 제42조(제출시한) 2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한다.

2. 특례적용시기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적용 대상범위

- 1) 각 과정의 논문제출시한 (학생의 입학일로 부터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10년, 석·박사 통합과정 12년) 경과자.
- 2) 각 과정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영어, 종합시험 또는 연구계획서)에 합격한 자.
- 3) 논문제출자격이 미비된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본 지침에 따른다.
- 4) 각 학위과정의 논문제출시한에서 5년이상 경과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제출자격시험은 공개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논문제출 절차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추천을 받아 주임교수 경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원 및 절차

- 1) 논문제출시한 경과자 연구등록 신청서 (소정 양식) 제출한다.
- 2) 성의교정 운영위원회의 논문제출 특례대상자 선정 심의(6월, 12월)를 거친다.
- 3) 특례 승인을 받은 당해 학기부터 논문을 제출하는 학기까지 매학기 연구등록금(수업료의 1/4)을 납부하여야 하며, 4학기(2년) 내에 논문심사를 마쳐야 한다.
<신설, 2010학년도 1학기 신청자부터 적용>
- 4)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5) 기타 논문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학사시행세칙을 준용한다.

6. 신청서 접수

매년 5월과 11월에 접수기간을 따로 정한다.

7. 공개종합시험

논문심사 전에 구술시험 형식으로 진행한다.

8. 논문심사

운영위원회의 선정 심의를 마친 다음 학기 학위별 논문심사일정에 따른다.

대학원과 특수대학원간의 학점교류 내규

제정 1999. 3. 1

개정 2014. 10. 29

제1 조(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대학교내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간의 학점교류에 따른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학점이수) ① 각 대학원 학생은 타 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류학점은 매 학기당 4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재학기간 중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일반대학원 성신교정 또는 문화영성대학원과 생명대학원 간에는 학생이 이수하는 총 학점의 1/2까지 교류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제3 조(이수과목 제한) ① 학점교류 과목에서 보충과목은 제외한다.

② 소속 대학원의 교과목과 중복되는 타 대학원의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이수할 수 없다.

제4 조(수강신청) 학점교류제를 통하여 학점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 조(학점인정)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수한 대학원에서 정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6 조(학점취소) 학점교류 과목에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등록취소 또는 교과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의 취소 혹은 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 조(학칙준수)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 조(준용) 본 내규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학무사항은 각 대학원의 학칙에 준한다.

부칙

제1 조(시행일) ① 이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내규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규정(부칙 제2조)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 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대학원과 각 교정 모든 특수대학원간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강대학교와의 대학원 학점교환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대학교와 서강대학교의 대학원 학점 교환제에 따른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점이수) ① 각 대학원 학생(전문대학원 포함)은 양 대학원간에 합의된 교과목을 타 대학원에서 이수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4>

② 매 학기당 교환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이수과목 제한) ① 교환과목은 대학원 수준의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전임교수의 담당과목으로 한다. 단, 양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간강사의 담당과목도 교환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다.

② 소속 대학원의 교과목과 중복되는 타 대학원 교과목은 택할 수 없다.

제4조(수강신청) ① 학점 교환제를 통하여 학점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학점 교환에 참가하지 않은 학과의 학생도 교환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5조(학점취소) 교환과목에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등록취소 또는 교과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의 취소 혹은 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학칙준수)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관 이용) 교환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준용)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학무 사항은 각 대학원의 학칙에 준한다.

부 칙

제1조(시행) ① 이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내규는 200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③ 이 내규는 2015년 10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가톨릭대학교-서강대학교 대학원 학점

교환제에 의한 도서관 이용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가톨릭대학교와 서강대학교의 대학원 학점 교환제에 따른 교환 학생의 도서관 자료의 상호 보완적 활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자의 자격) 교환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으로 소속 대학원장이 발행한 도서관 출입 의 퇴증을 소지한 자는 지정된 도서관의 이용이 허용된다.

제3조(도서열람 대출증 발급) 제2조에 의한 학생에게는 출입이 지정된 도서관에서 도서열람 및 대출증을 발급한다

제4조(열람 및 대출) 도서열람 및 대출증을 발급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도서관의 규정에 준하여 도서의 열람 및 대출이 허용된다.

제5조(도서의 분실, 훼손) 학생이 대출받은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당해 도서관의 변상규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변상 또는 복구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의 책임은 해당 학생의 소속 대학원장이 진다.

제6조(휴학 또는 수강취소) 제4조에 의하여 타 대학의 도서를 대출받은 학생이 휴학 또는 교환학점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즉시 도서를 해당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이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7조(도서관 이용기간) 타 대학교의 도서관 이용은 교환학점을 수강하는 학기에 한하여 허용되며, 학기가 끝난 후에도 대출도서를 반납지 않을 때에는 학생의 소속 대학원장이 도서의 반납을 위한 후속조치의 책임을 진다.

제8조(부칙) 본 내규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도서관 이용 사항은 각 대학교의 도서관 이용 규정에 준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내규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계획서 심사 규정

제정 1998. 10. 26.

개정 2021. 03.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의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성의교정 대학원에 한하며, 본 연구계획서 심사로 종합시험을 대체한다.

제3조(연구계획서)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가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논문 실험 전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제4조(계획서 작성) ① 계획서에는 이를 심사할 심사위원이 연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학위논문 작성을 위하여 장차 진행할 연구목적, 내용, 방법, 진행예정, 개요 및 참고문헌 등이 상세히 제시되어야 한다.

② 계획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3.3.>

제5조(제출시기) ① 연구계획서 제출은 입학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최소한 논문제출 6개월 전까지는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는 매년 3월과 9월에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한다. [개정 2014.5.14]

제6조(제출방법) 연구계획서를 1부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받아 대학원교학팀에 소정의 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2021.3.3.]

제7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의학과는 기초 및 임상교수가 참여하며, 간호학과는 간호학과 및 의학과 교수가 참여하도록 한다.

제8조(심사판정)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9조(심사 및 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4.5.14]

제10조(연구진행) ① 심사에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의 지도하에 연구를 진행토록 한다.

② 연구진행중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계획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및 변경요약표 [별지 제3호서식]와 변경된 연구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재심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논문제출 6개월 이전에 재심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21.3.3.>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9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규정(제7조)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6조, 제9조)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4조, 제6조, 제10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위원회 규정

제정 2019. 6. 22.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 연구 및 학내 생활 중 발생될 수 있는 인권침해 관련사건 및 고충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학원생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본교의 위법·부당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본교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구성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본교 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5. “성폭력”이란 「형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6.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피해자”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8. “가해자”란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9.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1.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2.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위원회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3.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에 적용을 받는 교원, 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본교 대학원 관련 구성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 2 장 인권위원회 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①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와 교정 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전체 위원회 및 교정 위원회의 인권침해 등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 시 대학원 행정팀은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③ 총장은 대학원생 인권침해 등 내용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전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정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사안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전체 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교정 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이 임명한다.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부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건의 조사 및 중재에 관한 사항
2.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3.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절차 및 조치
4. 사건에 따라 관련 부서 및 해당 위원회에 이관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논의하고, 관련부서 및 해당 위원회에 이관 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가 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결정한 처리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장 및 위원 중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사건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기피 및 회피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 없이 제척·기피 및 회피할 수 있다.

1. 사건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 본인인 경우
2. 사건 대상자가 위원이 속한 부서 또는 학과(전공)의 교원, 직원 및 학생인 경우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대상인 경우는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시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 3 장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와 처리 등

제9조(신고의 접수) ① 대학원생 피해 신고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대학원 행정팀에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접수 된 사건은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의 각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신고 된 내용에 의하여 피신고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제11조(임시조치) 위원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청구인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조치

3. 그 밖에 청구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정) ① 위원장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13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대학원 행정팀 및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대학원 행정팀 및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대학원 행정팀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방법 및 조사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정보의 조사

② 전 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신고내용의 진위,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참고인 그 밖에 사건 관련자 등을 면담할 수 있으며 면담 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④ 대학원 행정팀 및 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결과에의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사건의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명시된 피신고자의 행위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포함하여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6조(위원회 회부) 위원장은 당사자 간의 중재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위원회에 회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징계 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징계 사유를 명시해 피신고인의 소속과 신분 등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징계 요구 시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보복을 가한 경우가 중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위원회의 조사 활동 및 조치 행위의 이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관련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구제조치 등) ①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성희롱·성폭력 또는 인권침해 등의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 및 그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19조(처리결과와 통보) 위원장은 사건처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대학원 행정팀은 당사자에게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앞선 모든 관련 절차는 무효로 한다. 단,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관련 기록은 대학원 행정팀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합의 중재) 위원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조사결과 보고 전까지 피신고인과의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 제22조(당사자의 권리) 인권침해 등 사건의 모든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원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 제23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논의를 할 수 있다.
- 제24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강, 학점, 졸업, 취업, 승진,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교육권 및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25조(비밀유지) ① 사건의 접수 및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에게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되, 이 경우에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의 신원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은 물론 자문을 요청받은 사람은 자문 중 알게 된 사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 및 관련인은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처리의 결정 이전까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26조(수당) 외부위원, 자문위원에 대하여 소정의 사건 처리를 위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수업료 및 입학금 반환 규정

제정 1998. 02. 09.

개정 2020. 10. 30.

제1 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수업료 및 입학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제2 조(반환사유) 수업료 및 입학금을 당해학기에 납부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제적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0.30.>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제3 조(반환기준) ①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0.10.30.>

②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수업료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07.3.23., 2015.1.1., 2020.10.30.]

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학기 개시일(입학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4 조(지급방법) ① 반환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지도교수, 학부(전공주임)학과장 및 학장을 거쳐 교무처에 자퇴원을 제출하고, 교무처는 자퇴원을 첨부하여 부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무처에 통보한다.

② 사무처는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금액을 결정하여 부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반환한다.

③ 단, 입학전형(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 합격자가 등록 후 충원기한 이전에 합격(등록)을 포기할 때는 각 교정별 입학 관련 부서에 합격(등록)포기서를 제출하고 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사무처에서 반환을 받는다. <개정 2020.10.30.>

부칙

제1 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98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199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 규정(제3조)은 200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04학년도 제2학기 수업료 및 입학금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⑤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07학년도 제1학기 수업료 및 입학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2
학기 수업료 및 입학금부터 적용한다.

학점에 의한 등록금 감면 규정

제정 1979. 3. 1

개정 2018. 3.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의 학점에 의한 등록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감면액) 학부 또는 대학원생이 정규학기를 마쳤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한다. <개정 2018.3.10.>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2006. 2. 3 개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개정 2018.3.10.>

나.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개정 2018.3.10.>

다. <삭제 2018.3.10.>

제3조(감면신청) 등록금 감면 대상이 되는 자는 수강신청후 재무팀(경리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10.>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198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198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199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규정은 200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는 2002학년도 제1학기 등록생부터 적용한다.

⑦ 이 개정 규정(제2조)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개정 규정(제2조)은 200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은 201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최신 국외논문 초록 보고서

(초독 · 부전공)

월 별 : 월

과목코드 :

과 목 명 :

담당교수 :

제출자 - 과 정 : 석사 · 박사

전 공 :

학 번 :

제 출 자 : (인)

제출일자 : 년 월 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논문 연구계획서 심사 신청서

과 정	석사, 박사, 통합	학 과		전 공	
학 기	학기	학 번		성 명	
연락처	(핸드폰)			E-mail	
연구계획서 제 목	국문				
	영문				
심사위원 추 천 (지도교수 제외)	순번	이름	전공	추천 심사위원에 대한 지도교수 건의 사항	
	1				
	2				
	3				
	4				
	▶ 심사위원 4명을 심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순서에 따라 추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지도교수가 아닌 경우 계획서 심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심사위원 추천을 대학원에 일임할 경우에는 “ 대학원에 일임함 ”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1명은 계획서 내용에 대한 적절성 에 근거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교수와 전체 대학원 지도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이 선정하고 위촉 합니다. ▶ 연구계획서 심사위원은 해당 계획서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으로 자동 선정 됩니다.				
심사료 납 부	① 심사료 : 석사과정 120,000원, 통합 및 박사과정 150,000원 ② 방법: uPortal 신청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입금 또는 대학원교학팀(02-2258-7073)에 문의				
제출서류	심사 신청 시		심사 완료 후		
	1. 논문 연구계획서 심사 신청서 1부 2. 연구계획서: uPortal에 업로드		1. 연구계획서 심사 보고서 1부 2. 수정/보완한 연구계획서 1부 3. 연구계획의 IRB 심의 대상 여부 확인서 1부		
	※ 심사를 통과한 후 2주 이내 에 해당 서류를 대학원교학팀(☎02-2258-7073)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통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논문 연구계획서 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지도교수 :				(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학생	과 정	석사	박사	통합	학과	전 공	
	학 기	학기			학번	성 명	(인)
	연락처	(핸드폰)			(E-mail)		접수일
지도교수	성 명	(인)			연락처	(핸드폰) (E-mail)	
연구계획서 제 목	국 문						
	영 문						
<연구개요>							

I. 연구배경

II. 연구목적

Ⅲ. 연구방법

IV. 예상결과 및 기대효과

V. 연구추진 계획

VI. 참고문헌 및 기타사항

학위논문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						
학 생	과 정	석사 박사 통합	학과		전 공	
	학 기		학기	학번		성 명 (인)
	연락처	(핸드폰)	(E-mail)		접수일	년 월 일
지도교수	성 명	(인)	연락처	(핸드폰)	(E-mail)	
논문제목						
변경된논문 제목 및 변경내용						
<연구개요>						

연구계획서 변경 요약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연구논문 제목		
연구 개요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예상결과 및 기대효과		
연구추진 계획		
기타 사항		

연구계획의 임상연구심사위원회(IRB) 심사 대상 여부 확인서						
제 출 자	과 정		학 과		전 공	
	학 기		학 번		성 명	
	입학년월		생년월일		E-mail	
	연 락 처	HP.			지도교수	
연구계획서 제 목		국문				
		영문				
심의여부 확인		☐ 필 요 : IRB 승인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승인 번호를 기재 요망. () ☐ 불필요 : 사유()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라며, IRB 승인번호는 IRB 심사 신청기관에서 받습니다. ※ IRB 대상여부는 1차적으로 연구자(대학원생 및 지도교수)가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사람(Human subject)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결과로 작성된 학위논문은 그 논문의 학술지 게재와 무관하게 반드시 성의교정 임상연구심사위원회(IRB)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IRB 심의가 필요한 아래의 예를 참고하여, 심사를 통과한 연구계획서의 IRB 심의대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문 조사 ☐ 개인 식별, 특별한 질병, 또는 소인의 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DNA, RNA) 검사 ☐ Case report ☐ 사람을 대상으로 모아진 기록을 이용하는 연구 ☐ 인체조직 (혈액생체시료 포함)을 이용한 연구 ☐ 사체를 이용한 연구 등 ☐ IRB 대상인 경우 및 IRB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IRB 사무국(02-2258-8212)에 문의하거나 심사 신청을 하여 IRB 심사면제 및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IRB 평균 승인 소요기간은 약 1 ~ 2개월(정규심사 기준)이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심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통과한 연구계획서의 IRB 심사 필요성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서명) 지도교수 : (인/서명)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과 정	박사, 통합	학 과		전 공	
학 기	학기	학 번		성 명	
연락처	(핸드폰)			E-mail	
제출자격 (해당 항목에 √)	학점취득 ☐ 연구계획서 심사 통과 ☐ 종합시험 합격 ☐				
논문 제목	국문				
	영문				
SCIE논문일 경우	학술지명			IF	
연구계획서 제 목	국문				
	영문				
심사위원 추 천 (지도교수와 연구계획서 심사위원 제외)	순번	이름	소속 및 전공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1				
	2				
	3				
	4				
	▶ 심사위원 4명(외부교수 1인포함)을 심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순서에 따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 교수의 경우 박사학위를 소지한 4년제 정규대학의 부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외부교수는 최대 2명까지 심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한 교수와 전체 대학원 지도교수 중에서 계획서 내용에 대한 적절성에 근거하여 대학원장이 최종 선정하고 위촉합니다. ▶ 연구계획서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은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으로 자동 선정됩니다.				
심사료 납 부	① 심사료 : 620,000원 ② 방법: 심사 신청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입금 또는 대학원교학팀(☎02-2258-7073)에 문의				
제출서류	① 심사신청서 1부, ② 학위논문 연구윤리 서약서 1부 ③ 논문 (uPortal에 업로드) ④ IRB 심사결과통보서 1부 ⑤ 논문표절 점검확인서 ⑥ 논문 별책 (해당자) 1부				
위와 같이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지도교수 : (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학위논문 연구윤리 서약서

제 출 자	과 정		학 과		전 공	
	학 기		학 번		성 명	
	입학년월		생년월일		E-mail	
	연 락 처	HP.			지도교수	
논문 제목	국문					
	영문					

위 본인은 학위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하지 않고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직하게 연구를 수행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서명)

확인자 : 지도교수 (인/서명)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